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Ⅷ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0.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II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0.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 간 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과감하고 적시성 있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 등의 재정 악화 문제가 또다시 세계 경제를 위협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재정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변화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 남북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등 머지 않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11년도와 2014년까지의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금번 예산안 심사는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초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 세제개편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도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지원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예산안 및 중기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간되던 '경제전망', '세수추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등의 보고서를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 제 Ⅰ 권 :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 제 Ⅱ 권 : 2011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
□ 제 Ⅲ 권 : 2010년 세제개편안 분석
□ 제 Ⅳ 권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제 Ⅴ 권 :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 제 Ⅵ 권 : 2010~201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 제 Ⅶ 권 : 2010~2014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 제 Ⅷ 권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종 합 편

새로운 구성과 내용으로 발간되는 본 보고서 시리즈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활동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총 8권의 주제별 분석과 이를 망라한 「종합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법부 차원의 독자적인 내년도 및 향후 5년간의 거시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총수입 전망,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 지출 전망 및 재정수지, 국가채무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그리고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 올해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되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의 첨부서류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차 례

요 약

Ⅰ. **조세지출예산제도 개관** ····· 11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 11
2.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운용현황 ····· 12
3. 조세지출예산제도 해외사례 ····· 37

Ⅱ.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48

1.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 ····· 48
2.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 ····· 59
3.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 69

Ⅲ.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 75

1.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 75
2. 기타 제도개선 대안 ····· 77

별첨자료 ····· 81

참고문헌 ····· 179

표 차례

[표 1]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 14
[표 2]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추이 ····· 17
[표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추이 ····· 20
[표 4]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추이 ····· 25
[표 5]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 29
[표 6] 2007~2009년도 신설·폐지 외의 사유로 인한 조세지출 항목 변동내역 ····· 31
[표 7]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2009년 기준) ····· 35
[표 8] OECD 국가들의 조세지출보고서 ····· 45
[표 9] OECD 국가들의 조세지출 : 기준조세(benchmark) 및 분류 ····· 46
[표 10] 조세지출예산서의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항목의 조세지출 포함여부 (기준 불명확) ····· 54
[표 11] 조세지출예산서에 누락되어 관리가 필요한 항목(예시) ····· 57
[표 12] 임시투자세액공제 현황 ····· 62
[표 13] 회귀분석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a+b*총고정자본형성+e ····· 62
[표 14] 국세청 소관세입의 상반기 진도비 추이 ····· 64
[표 15] 조세지출 규모 측정 흐름도 ····· 66
[표 16]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분야 및 부문 분류체계(2011년도 예산안) ····· 71
[표 17]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의 분류기준 변화비교(예시) ····· 72
[표 18] 분야별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의 비교 ····· 74
[표 19] 조세지출예산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78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국세감면추이 ····· 12
[그림 2]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추이(1999~2011) ····· 16
[그림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 ····· 19
[그림 4]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직접세 부문) ····· 22
[그림 5]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대분류) ····· 24
[그림 6]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소분류) ····· 28
[그림 7]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 30

요 약

1. 조세지출예산제도 개관

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각종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를 통한 재정지원 현황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를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국가재원배분은 물론 재정지원 수단의 효과성을 비교·평가하는 등 예산심사 등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이를 통해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이 동 제도를 도입하는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처음 2011년도 예산안의 일부로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온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전망액을 자체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연도 말에 국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은 거의 없었음

○ 반면 조세지출예산서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인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내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와 차별화 됨

❑ 그러나 올해 처음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현행 국가재정법이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하여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하기는 어려움

○ 국회에서의 예산안 및 세법관련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주요 재정정보들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에 본 보고서는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실질적으

로 기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주요쟁점이라 할 수 있는 '조세지출의 정의 및 포괄범위', '조세지출규모의 추계방법',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함

나. 우리나라 조세지출 운용현황

❑ 조세지출보고서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난 10여 년 간 조세지출의 운용에 관한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국세감면액은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 증가율인 6.6%를 상회

- 이와 같은 국세감면액의 증가추세는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감면금액이 큰 기존 항목들의 감면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00년 이래 12~13% 중반 수준을 유지하던 국세감면율이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2008년 및 2009년 각각 14.7%, 15.9%)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조세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8년 이후 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은 물론 '유가환급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등 상당수 조세감면 제도들이 적극 활용된 데에 주로 기인함

- 그 밖에 2009년 실적부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등 그동안의 일부 국세통계집계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세감면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던 조세감면 항목 또는 세목을 추가하는 등 국세감면액의 집계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임

○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연도별 조세감면 항목 수는 2001년도 이후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세감면액의 증가추이와 대비

- 2001년도 273개에 이르던 조세감면 항목수가 거의 매년 꾸준히 감소하다 2007년 219개, 2009년에 180개로 조세감면 항목수가 크게 감소

- 이러한 조세감면 항목수 변동추이는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일몰종료)와 같이 비과세·감면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항목들이 기존 항목들 간의 통합, 폐지되지 않은 기존 항목의 삭제

또는 기존에 감면되던 항목들의 사후적인 추가 등 조세지출에 대한 범위와 분류 등 관련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2.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가.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

❑ OECD(1996)는 조세지출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조세체계(tax system into a benchmark or norm)라 정의하고, 조세체계가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때에 조세지출이 존재한다고 봄

○ 기준조세체계로는 기본 세율구조, 회계관행, 행정의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제시

❑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과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각 국의 관행은 매우 다양한 실정임

○ 이와 같이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조세지출의 주요 특징으로 수혜자집단의 특정성, 다른 지원수단으로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을 제시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규정

○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도 무엇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써 국가재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조세지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따라서 현행 조세법 체계로부터 무엇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의 조세지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는 그 포괄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 항목들을 볼 때, 최근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조세지출로 분류되고 있던 항목들이 조세지출예산서에 그대로 반영

❑ 그러나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기준조세체계 또는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향 후 그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 항목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조세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운용에 있어 국세감면율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큼

– 조세지출 항목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때에 연간 조세감면규모(국세감면액)와 이에 기초한 국세감면율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선정시 고려요소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의 명확성, 정보의 투명성과 충분성, 정보의 신뢰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정책관리 대상이 되는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일례로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각종 비과세 조항들 중 '대학교원 등 연구활동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비과세조항은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학자금 비과세' 일부 항목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를 구분한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조세지출이 갖는 개념적 모호성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공하되, 이를 캐나다의 예와 같이 별도의 비망항목(memorandum item)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항목 등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특정집단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감면금액이 집계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일부 누락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해당항목이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있지만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모든 세목이 아닌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면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바이오디젤(BD) 개별소비세 면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은 조세지출의 범주에서 제외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들 중 감면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세목에 대하여 감면금액을 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항목 등 조세지출로 볼 여지가 큰 항목들에 대하여는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되,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

나.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

❑ 조세지출추계의 필요성

○ 조세지출보고서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금액과 전년도 실적을 비교하여 작성하는 형식이었으나,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추정금액까지 제출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세법을 개정할 때에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신설되는 혹은 일몰이 연장되는 제도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조세지출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조세지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의 금액은 계산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이 숫자들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지출 규모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현재로서는 대부분 과거 증가율 등을 활용하여 전망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근거 없이 추계된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 금액에 대한 평가는 차후로 미루되,

○ 향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조사함

❑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기법으로는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증가율 분석 등의 방식이 가능

○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조세지출 규모와의 관계를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추정해 낸 후, 이를 사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 것임

–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세법개정 여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임

○ 미시모의실험모형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추계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 자료를 표본자료로 구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임

– 우리나라에서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에 입각하여 세수추계를 행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미시자료 자체의 구축이 미진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미시자료도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형의 개발과 실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임

○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증가율 분석은 실제로 우리나라, 특히 정부 당국이 조세지출 규모 추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의 하나로 해당 연도의 특정 시점까지 발생할 조세지출 실적을 과거 그 시점까지의 진도비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임

– 진도비 분석방법은 조세지출 추정치의 월별 형태가 지난해 또는 과거의 평균적인 행태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은 경제 환경에 따라 조세지출의 형태가 많이 변할 때는 지난 해의 조세지출 형태에 의존하는 조세지출 추계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다.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분류기준을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분류체계와 기준을 일치시켜 세출예산과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그동안 조세지출보고서는 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지원분야별로 조세지출 항목들을 분류하여 분야별 감면액을 집계해 왔으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까지 180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분류하여 항목별 분류정보를 제공

❑ 다만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의 예산 및 세법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최소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계된 분야별 총량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

-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재정지출의 총량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큼

○ 더 나아가 차기연도의 조세지출내역을 세출예산안과 함께 기능별·세목별로 적시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산 기능별로 세출예산안과 조세지출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재정의 운용을 정책수단별로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
-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부처별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소관별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방안

가.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 올해 처음 도입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형식적인 운용을 막고 제도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정보가 국회의 예산심사 및 세법심사 과정에서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고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추계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추계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금액에 대한 추계기간을 3년(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전망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기적인 시각을 담아낼 수 없으므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중기적인 시각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기간과 일치시켜야 할 것

- 현행과 같이 다음연도 조세지출에 대한 전망액으로는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항목의 개정에 따른 조세감면액 변화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여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예를 들어 올해(2010년) 행정부 주요 세제개편안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설'의 경우 내년(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2년부터 가시화되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주요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확인하기 곤란

○ 조세지출예산서의 추계기간을 5년 중기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당해연도 세제개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에 따른 추계효과를 Baseline 추계(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조세감면금액)와 함

께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세법 심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조세지출예산서가 세법 또는 예산심사과정에서 국가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면 조세지출 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조세지출 항목들 중 당해연도 일몰도래 항목과 감면규모 일정금액 이상의 주요 항목 등을 중심으로 제도운용 성과 및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

나. 기타 제도개선 대안

❑ 그 밖에 조세지출 관련 항목들의 근거 법체계 및 조세감면정보의 수집·보고체계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우선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항목들은 상당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에 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법 등에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큼

-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집단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 규정·관리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

○ 조세지출 항목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정보의 수집·보고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

-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액 중 '추정곤란' 항목들은 조세지원 관련 정보수집 체계가 미흡한데에도 일정부분 기인하기 때문임

- 다만 조세감면정보의 추가적인 수집은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면정보에 관한 신고서식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됨

Ⅰ. 조세지출예산제도 개관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각종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를 통한 재정지원 현황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를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국가재원배분은 물론 재정지원 수단의 효과성을 비교·평가하는 등 예산심사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전망액을 자체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연도 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은 거의 없었다.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인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내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올해 처음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현행 국가재정법이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하여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올해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조세지출예산세도의 개관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와 제도도입 취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 조세지출 운용현황과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분석은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서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와 관련한 기본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기로 한다.

제3장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분석을 토대로 조세지출예산서가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2.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운용현황[1)]

가. 국세감면추이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지방세 부문을 제외한 국세감면 금액)을 총 31조 62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 대비 15.8%, GDP대비 2.9%에 달하는 규모이며, 조세지출 중 그 규모가 추정되지 않는 항목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조세지출이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짐작된다. 아래의 그림과 표는 연도별 조세지출(국세감면액) 규모의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1] 연도별 국세감면추이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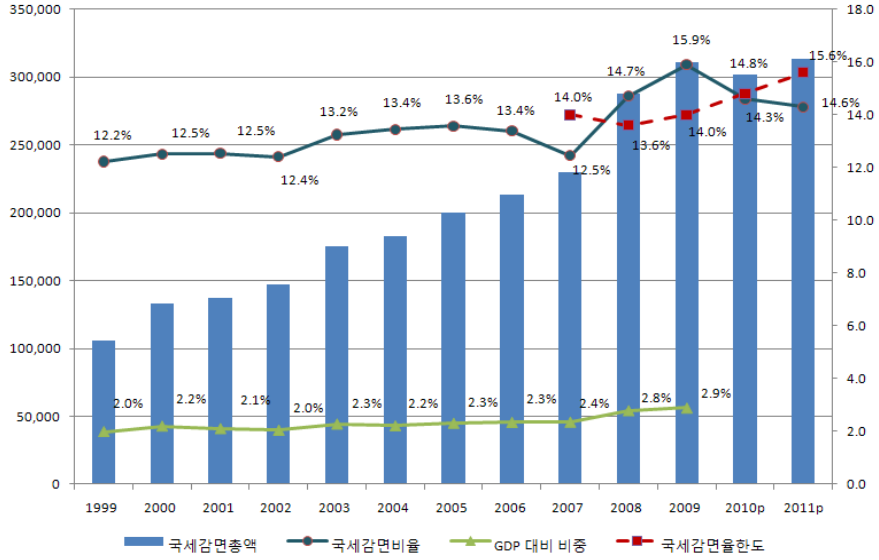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 이 절은 정지은(2009)의 내용을 추가·정리한 것이다.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999년 이래 12% 중반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 13.6%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다가 2008년 및 2009년 국세감면율이 각각 14.7%, 15.9%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율 한도인 2008년 13.6%, 2009년 14.0%를 모두 초과한 수치로 2008년 이후 국세감면규모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

이와 같이 최근 조세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8년 이후 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은 물론 '유가환급금' 및 '노후자동차 교체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등 상당수 조세감면 제도들이 적극 활용된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조세지출 항목들의 감면규모 역시 최근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올해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등 그동안의 일부 국세통계집계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세감면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던 조세감면 항목 또는 세목을 추가하는 등 국세감면액의 집계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2) 국가재정법 제88조의 국세감면율한도제는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표 1]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p
국세감면총액(a)	77,305	105,419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9,652	287,827	310,621	301,396	313,600
국세감면증감율		36.4%	26.0%	3.4%	7.3%	18.9%	4.4%	9.5%	6.6%	7.6%	25.3%	7.9%	−3.0%	4.0%
국세수입총액(c)	677,980	756,580	929,405	957,948	1,039,678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1,614,591	1,673,060	1,645,407	1,750,125	1,878,469
국세수입증감율		11.6%	22.8%	3.1%	8.5%	10.3%	2.7%	8.2%	8.3%	17.0%	3.6%	−1.7%	6.4%	7.3%
국세감면비율 (a/(a+c))		12.2 %	12.5%	12.5%	12.4%	13.2%	13.4%	13.6%	13.4%	12.5%	14.7%	15.9%	14.7%	14.3%
국세감면율한도										14.0%	13.6%	14.0%	14.8%	15.6%
GDP(억원)	4,841,028	5,294,997	6,032,360	6,514,153	7,205,390	7,671,137	8,268,927	8,652,409	9,087,438	9,750,130	10,264,518	10,630,591		
GDP 대비 국세감면비중	1.6%	2.0%	11.6%	2.1%	2.0%	2.3%	2.2%	2.3%	2.3%	2.4%	2.8%	2.9%		

주 1. 1998년: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만 대상으로 작성, 1999년: 관세제외(직접세+간접세) 2000년부터 관세감면 포함을 포함
2. 국세감면총액, 관련국세에서 교육세, 농특세는 2006년 실적부터 포함
3. 기획재정부는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에서 국세감면율 한도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국세수입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국세감면율을 발표하고 있음
4. 2002년 이전 국세감면비율은 국세수입총액을 기초로 별도 작성
5. 1998~1999년 GDP는 2000년 지수기준년 계열, 2000년 이후 GDP는 2005년 지수기준년 계열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한국은행, ECOS(www.ecos.bok.or.kr).

나.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아래의 [그림 2]와 [표 2]는 연도별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와 세목별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총 조세지출 규모에서 2009년도 직접세는 총 23조 2,695억원, 간접세는 7조 4,925억원으로 각각 74.9%와 24.1%를, 그 밖에 관세는 3,001억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조세지출 금액 중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 부문의 감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세와 간접세 부분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직접세 감면은 10.4%, 간접세 감면은 8.4%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최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결제금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간접세 부문 조세지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세 부문의 조세감면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세목별 국세수입과 조세지출 연평균증감율을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국세총수입 연평균 증가율(6.6%)에 비해 조세지출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9.9%)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세목 중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부문 조세지출의 연평균증가율(13.4%)이 소득세수의 연평균 증가율(7.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수의 연평균 증가율(7.8%)보다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의 연평균증가율(5.8%)이 하회하고 있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법인세 부문의 조세지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기업수익률(특히 영업외 손익률)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 그리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조세지출증가율(7.9%)이 국세수입증가율(10.5%)에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의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동 세목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이 그리 많지 않고[3], 최근 신설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의 경우 감면규모가 추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주세 및 인지세의

2) 김우철(2007)

3) 2010년 10월 현재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세지출항목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특법§7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조특법 §30의6), 공익법인출연재산·공익신탁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16·17) 4개항목이다.

경우 국세수입증가율이 조세지출증가율을 상회하는 반면, 개별소비세·교통세 및 관세는 조세지출증가율이 국세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 감면의 연평균 증가율(31.6%)이 해당 세목의 국세수입증가율(2.2%)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골프장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와 같이 경제 활성화 대책 등으로 개별소비세의 감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추이를 보면, 전 기간에 걸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 부문의 조세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2000년 38.9%, 2005년 40.1%, 2009년 50.4%)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특히 법인세 부문은 2001년, 2003년, 2005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증가로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2.6%에서 2005년 34.2%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감소로 전체 비중이 하락하였다. 최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법인세 감면 항목들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법인세 감면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3.1%로 과거에 비해 낮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추이(1999~201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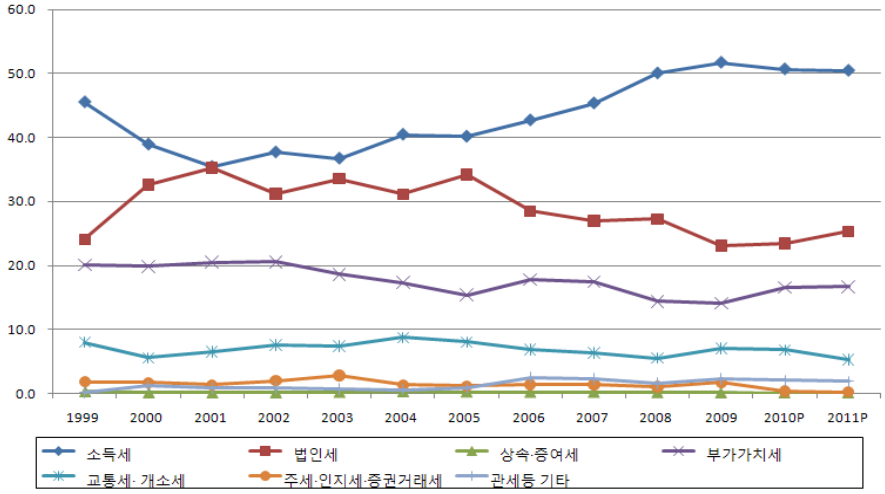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표 2]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추이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p	조세지출*/국세수입*
합 계	105,419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9,651	287,827	310,621	301,396	313,600	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6
직접세	73,689	95,147	97,183	101,676	123,311	131,485	149,236	152,315	166,470	225,030	232,695	223,582	237,978	10.4
	69.9	71.6	70.8	69.0	70.4	71.9	74.6	71.4	72.5	79.0	74.9	74.2	75.9	7.3
소득세	47,988	51,692	48,643	55,512	64,291	73,982	80,360	91,114	104,144	154,547	160,593	152,718	158,205	13.4
	45.5	38.9	35.4	37.7	36.7	40.5	40.1	42.7	45.3	54.2	51.7	50.7	50.4	7.7
법인세	25,386	43,286	48,397	45,980	58,698	56,948	68,408	60,810	61,925	70,181	71,767	70,619	79,469	5.8
	24.1	32.6	35.2	31.2	33.5	31.1	34.2	28.5	27.0	24.6	23.1	23.4	25.3	7.8
상속 · 증여세	315	169	143	184	322	555	468	391	401	302	335	245	304	7.9
	0.3	0.1	0.1	0.1	0.2	0.3	0.2	0.2	0.2	0.1	0.1	0.1	0.1	10.5
간접세	31,730	36,293	39,025	44,323	50,558	50,274	49,262	58,053	60,466	59,942	74,925	75,496	72,866	8.4
	30.1	27.3	28.4	30.1	28.9	27.5	24.6	27.2	26.3	22.6	24.1	25.0	23.2	6.3
부가가치세	21,165	26,408	28,120	30,267	32,628	31,735	30,784	38,033	40,083	39,657	43,741	49,965	52,404	5.8
	20.1	19.9	20.5	20.6	18.6	17.4	15.4	17.8	17.5	13.9	14.1	16.6	16.7	8.2
교통세	6,541	6,512	7,343	9,105	10,319	12,416	12,511	12,126	12,359	10,187	10,816	9,399	10,477	5.8
	6.2	4.9	5.3	6.2	5.9	6.8	6.3	5.7	5.4	3.6	3.5	3.1	3.3	2.1
개별소비세	1,891	936	1,593	2,013	2,679	3,623	3,591	2,589	2,228	4,929	11,061	11,178	6,094	31.6
	1.8	0.7	1.2	1.4	1.5	2.0	1.8	1.2	1.0	1.7	3.6	3.7	1.9	2.2
주세	311	338	317	328	440	424	531	458	453	538	425	422	490	2.6
	0.3	0.3	0.2	0.2	0.3	0.2	0.3	0.2	0.2	0.2	0.1	0.1	0.2	3.9
인지세	484	537	697	483	466	433	454	516	494	103	98	112	113	−17.2
	0.5	0.4	0.5	0.3	0.3	0.2	0.2	0.2	0.2	0.0	0.0	0.0	0.0	3.8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p	조세지출*/국세수입*
증권거래세	1,134	1,388	833	2,127	4,026	1,643	1,391	2,002	2,308	2,601	4,670	523	186	14.4
	1.1	1.0	0.6	1.4	2.3	0.9	0.7	0.9	1.0	0.9	1.5	0.2	0.1	2.2
전화세	204	174	122	–										
	0.2	0.1	0.1											
교육세								2,329	2,541	1,927	4,114	3,897	3,102	4.7
								1.1	1.1	0.7	1.3	1.3	1.0	−4.7
관세		1,384	1,090	1,262	1,211	1,103	1,671	3,012	2,715	2,855	3,001	2,318	2,756	9.0
		1.0	0.8	0.9	0.7	0.6	0.8	1.4	1.2	1.0	1.0	0.8	0.9	5.2

주: 1. *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감율
2. 전화세는 2001.9.1일부터 부가가치세로 통합
3. 관세는 2000년부터, 교육세는 2006년부터 집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다.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수단(감면방법)으로는 직접세 부문에서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저율과세·준비금·과세이연 등이, 간접세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제·기타 간접세 면제·납부세액경감·매입세액공제 등이 활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와 그림은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도 조세지출의 감면방법별 감면금액을 보면, 직접세 부문은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74.9%에 해당하는 23조 2,695억원이다. 이 중 비과세·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 등 직접감면은 23조 1,603억원(74.6%), 준비금·과세이연 등 간접감면은 1,092억원(0.4%)으로 조세지출 규모면에서 직접감면 방식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직접세 부문의 감면 방식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방식의 감면이 전체 조세지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1%, 16.3%, 15.9%로 전체 감면총액의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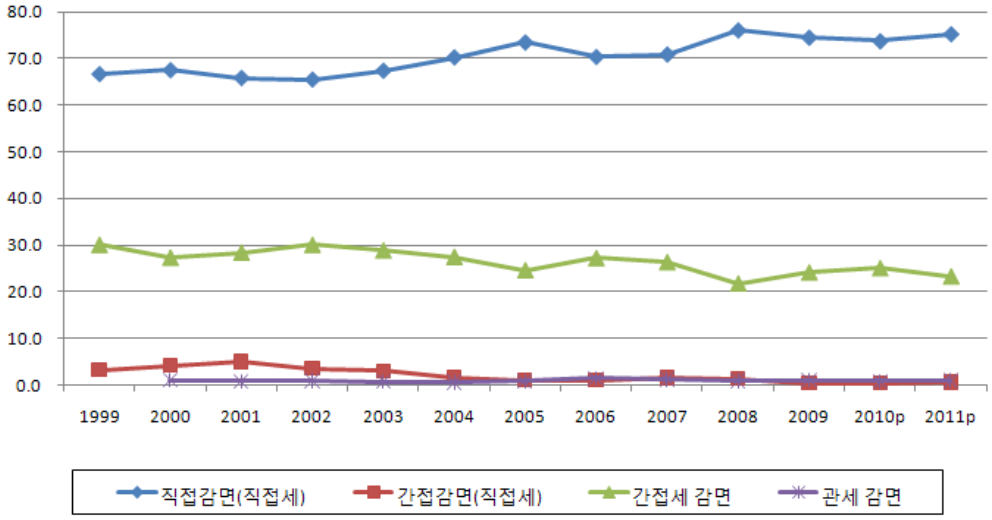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표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추이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p	증감율*
합 계	105,419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3,379	229,651	287,827	310,621	301,396	313,600	9.9
직접세	73,689	95,147	97,183	101,676	123,311	131,485	149,236	152,315	166,469	225,031	232,695	223,582	237,978	10.4
	69.9	71.6	70.8	69.0	70.4	71.9	74.6	71.4	72.5	78.2	74.9	74.2	75.9	0.5
직접감면	70,269	89,678	90,370	96,426	118,019	128,548	147,163	150,190	162,896	223,453	231,603	222,388	236,213	11.1
	66.7	67.5	65.8	65.5	67.4	70.3	73.5	70.4	70.9	77.6	74.6	73.8	75.3	1.1
· 비과세	21,204	22,921	17,714	14,887	13,572	12,894	16,617	17,126	16,181	19,083	24,098	26,485	29,455	0.6
	20.1	17.3	12.9	10.1	7.8	7.1	8.3	8.0	7.0	6.6	7.8	8.8	9.4	−8.5
· 세액감면	14,211	15,176	16,031	18,263	19,894	24,583	21,746	27,738	31,390	35,813	51,344	47,677	49,931	14.5
	13.5	11.4	11.7	12.4	11.4	13.4	10.9	13.0	13.7	12.4	16.5	15.8	15.9	4.2
(소득·법인세)	6,263	8,638	11,258	14,644	15,707	18,878	16,743	18,041	18,873	22,657	25,025	23,736	24,662	12.5
	5.9	6.5	8.2	9.9	9.0	10.3	8.4	8.5	8.2	7.9	8.1	7.9	7.9	2.4
(양도·상증세)	7,948	6,538	4,773	3,619	4,187	5,705	5,003	9,697	12,517	13,156	26,319	23,941	25,269	16.7
	7.5	4.9	3.5	2.5	2.4	3.1	2.5	4.5	5.5	4.6	8.5	7.9	8.1	6.2
· 세액공제	6,532	16,265	18,022	18,239	29,412	30,897	39,264	34,673	35,989	41,060	42,365	43,068	51,106	11.2
	6.2	12.2	13.1	12.4	16.8	16.9	19.6	16.2	15.7	14.3	13.6	14.3	16.3	1.2
· 소득공제	12,282	16,322	23,741	31,550	36,712	43,174	51,252	54,427	67,246	86,741	94,700	87,879	88,035	21.6
	11.7	12.3	17.3	21.4	21.0	23.6	25.6	25.5	29.3	30.1	30.5	29.2	28.1	10.6
· 저율과세	10,495	9,691	3,529	2,729	6,013	5,189	7,365	8,496	5,210	6,160	4,961	5,996	6,094	−7.2
	10.0	7.3	2.6	1.9	3.4	2.8	3.7	4.0	2.3	2.1	1.6	2.0	1.9	−15.5
기타	5,545	9,303	11,333	10,758	12,416	11,811	10,919	7,730	6,880	34,596	9,598	6,955	6,947	0.3
	5.3	7.0	8.3	7.3	7.1	6.5	5.5	3.6	3.0	12.0	3.1	2.3	2.2	−8.7
근로장려금											4,537	4,328	4,645	1.2
											1.5	1.4	1.5	0.7
간접감면	3,420	5,469	6,813	5,250	5,292	2,937	2,073	2,125	3,573	1,578	1,092	1,194	1,765	−16.4
	3.2	4.1	5.0	3.6	3.0	1.6	1.0	1.0	1.6	0.5	0.4	0.4	0.6	−23.9
간접세	31,730	36,293	39,025	44,323	50,558	50,274	49,262	58,053	60,467	59,940	74,925	75,496	72,866	8.4
	30.1	27.3	28.4	30.1	28.9	27.5	24.6	27.2	26.3	20.8	24.1	25.0	23.2	−1.4
부가가치세	12,318	14,935	13,479	13,618	14,758	15,554	15,199	20,506	21,101	19,921	20,566	23,410	23,901	3.6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p	증감율*
영세율	11.7	11.2	9.8	9.2	8.4	8.5	7.6	9.6	9.2	6.9	6.6	7.8	7.6	−5.7
부가가치세	5,561	5,928	5,920	5,023	4,766	5,016	4,304	4,289	5,518	3,989	4,177	4,318	4,450	−3.8
면세	5.3	4.5	4.3	3.4	2.7	2.7	2.2	2.0	2.4	1.4	1.3	1.4	1.4	−12.5
개소·교통·교	8,429	7,392	8,512	10,665	12,255	15,060	16,463	14,715	15,345	17,043	25,991	24,474	19,673	15.0
육세 면제	8.0	5.6	6.2	7.2	7.0	8.2	8.2	6.9	6.7	5.9	8.4	8.1	6.3	4.6
주세·증권거래·	2,133	2,437	1,969	2,938	4,932	2,500	1,846	5,304	4,684	3,241	5,193	1,057	789	8.8
인지세 면제	2.0	1.8	1.4	2.0	2.8	1.4	0.9	2.5	2.0	1.1	1.7	0.4	0.3	−1.0
기타 감면	3,289	5,601	9,145	12,079	13,847	12,144	11,450	13,239	13,819	15,746	18,998	22,237	24,053	14.5
	3.1	4.2	6.7	8.2	7.9	6.6	5.7	6.2	6.0	5.5	6.1	7.4	7.7	4.2
관세	−	1,384	1,090	1,262	1,211	1,103	1,671	3,011	2,715	2,715	3,001	2,318	2,756	9.0
	−	1.0	0.8	0.9	0.7	0.6	0.8	1.4	1.2	1.0	1.0	0.8	0.9	−0.8

주 1. 2002년 이전까지 양도소득세 항목에 특별부가세 포함

2. *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감율, 단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2011년(잠정)까지 연평균 증감율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간접세 부문은 전체 감면금액의 24.1%에 해당하는 7조 4,925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등이 2조 4,749억원(7.9%), 교통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면제가 3조 1,184억원(10.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매입세액공제 등 기타 감면이 1조 8,998억원(6.1%)이다. 그 밖에 관세부문의 비과세·경감 등은 3,001억원으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간접세 감면 중 그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3.6%의 증가에 그치고, 부가가치세 면세는 -3.8%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등 기타감면 방식의 감면규모의 증가율이 14.5%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래의 그림은 직접세 부문의 감면방법별 조세지출금액의 연평균증가율과 연도별 비중추이를 보여주고 있다.[4] 위 표에서 직접감면 방식 중 비과세 조세지출금액은 0.6%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금액비중의 증가율은 −8.5%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저율과세의 조세지출 금액과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금액비중의 증가율도 −7.2% 및 −15.5% 감소 추이를 보였다.

[그림 4]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직접세 부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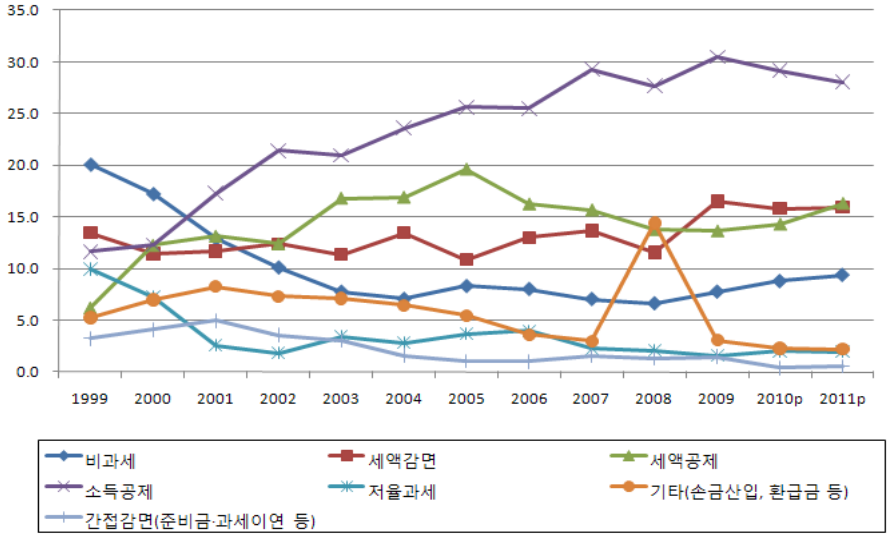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4) 간접세 부문의 감면방법 분류는 앞에서 다룬 세목별 감면과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최근 비과세 및 저율과세 부문은 특히 2003년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 비과세·저율과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세금우대 저축제도의 정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같은 기간동안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비과세 방식의 조세감면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조세지출 금액 및 비중 증가율이 각각 21.6%, 10.6%로 전 기간에 걸쳐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 방식의 조세감면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방식은 조세지출 금액은 전체 조세감면액 증가율(9.9%)보다 높은 11.2%를, 그리고 전체 조세지출 금액 대비 비중은 1.2%의 증가추이를 보였다. 이는 세액공제 방식의 조세지출 중 조세감면 금액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에너지절약 및 환경·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 경향도 세액공제 방식식의 감면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세액감면 방식의 경우도 조세지출 금액 및 비중 증가율이 각각 14.5%, 4.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말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폐지 등으로 해당 세목의 세액감면 항목들이 다수 폐지되어 조세감면 금액의 감소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주요 항목의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조세감면액 증가율(9.9%)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비금, 과세이연 등 간접감면 방식의 경우 조세지출 금액과 전체 비중 모두 각각 -16.4%, -23.9%로 큰 폭의 감소추이를 보였다. 간접감면 방식의 조세지출 비중이 축소된 것은 준비금제도 등이 복잡한 감면절차에 비하여 감면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2000년 이후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등 상당수 준비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간접감면 방식 중 감면규모가 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 2006년 말 폐지되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시행되어 향후 감면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기타(직접세) 분야의 감면금액이 2008년 한시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고유가대책으로 일환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2조 6,386억원)이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

아래의 그림과 표는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2009년(전망액) 기준으로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지원 분야가 13조 8,419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48.7%를, 경제개발지원이 9조 1,954억원으로 32.4%, 사회개발지원이 4조 9,599억원으로 17.5%, 국방 등 기타지원이 3,996억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그동안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집계한 분야별 조세지출금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 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까지 180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분류하여 항목별 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보고서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야별 조세지출 추이를 제시하기로 한다.5)

[그림 5]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대분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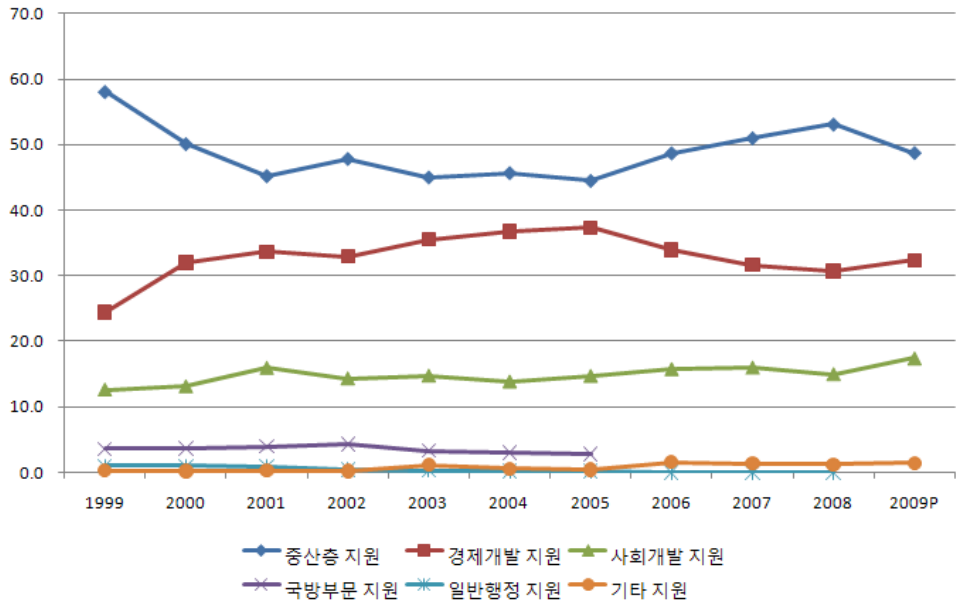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5)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프로그램예산체계에 따른 조세지출 항목의 분류는 보고서의 제2장 제3절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에서 자세히 다룬다.

[표 4]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추이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증감율*
합 계	105,419	132,823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9,652	287,827	283,968	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중산층 지원	61,323	66,546	62,073	70,435	78,767	83,486	88,990	103,904	117,133	152,938	138,419	8.5
	58.2	50.1	45.2	47.8	45.0	45.7	44.5	48.7	51.0	53.1	48.7	−0.3
저축 지원	27,451	28,316	15,572	13,161	15,012	12,050	10,696	12,345	14,019	17,410	18,942	−4.4
	26.0	21.3	11.3	8.9	8.6	6.6	5.3	5.8	6.1	6.0	6.7	−12.1
근로자 지원	12,960	16,288	23,964	33,638	36,517	40,988	46,611	48,457	53,925	88,400	74,309	18.4
	12.3	12.3	17.5	22.8	20.9	22.4	23.3	22.7	23.5	30.7	26.2	8.8
농어민 지원	20,874	21,908	22,508	23,604	27,209	30,419	31,654	43,074	49,159	47,129	45,168	8.4
	19.8	16.5	16.4	16.0	15.5	16.6	15.8	20.2	21.4	16.4	15.9	−0.4
경제개발 지원	25,735	42,486	46,239	48,505	62,152	67,195	74,789	72,461	72,693	88,234	91,954	9.0
	24.4	32.0	33.7	32.9	35.5	36.7	37.4	34.0	31.7	30.7	32.4	0.1
중소기업 지원	4,901	8,257	12,671	18,407	20,955	18,881	14,885	19,090	20,347	33,027	31,848	16.2
	4.6	6.2	9.2	12.5	12.0	10.3	7.4	8.9	8.9	11.5	11.2	6.8
설비투자 지원	4,642	10,739	12,556	9,779	16,318	23,711	33,884	29,214	26,271	29,107	32,887	13.2
	4.4	8.1	9.1	6.6	9.3	13.0	16.9	13.7	11.4	10.1	11.6	4.1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4,278	9,792	9,111	9,527	13,950	12,564	13,224	13,120	16,429	18,619	18,606	7.4
	4.1	7.4	6.6	6.5	8.0	6.9	6.6	6.1	7.2	6.5	6.6	−1.3
SOC · 공공투자 지원	5,177	4,988	4,481	3,125	3,590	3,269	2,200	6,445	5,611	2,806	2,614	−6.9
	4.9	3.8	3.3	2.1	2.1	1.8	1.1	3.0	2.4	1.0	0.9	−14.5
금융산업 지원	1,684	2,744	3,813	3,103	2,940	3,399	4,504	1,460	1,042	513	693	−14.2
	1.6	2.1	2.8	2.1	1.7	1.9	2.3	0.7	0.5	0.2	0.2	−21.1
구조조정 지원	3,001	4,386	1,812	1,161	279	132	84					−54.7
	2.8	3.3	1.3	0.8	0.2	0.1	0.0					−58.2
경쟁력 강화 지원	2,030	1,549	1,763	3,372	4,087	5,205	5,974	3,100	2,963	4,162	5,306	14.7
	1.9	1.2	1.3	2.3	2.3	2.8	3.0	1.5	1.3	1.4	1.9	5.4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증감율*
사회개발 지원	13,272	17,427	21,986	21,128	25,879	25,354	29,482	33,711	36,845	43,263	49,599	12.3
	12.6	13.1	16.0	14.3	14.8	13.9	14.7	15.8	16.0	15.0	17.5	3.2
교육 · 문화 · 체육 분야 지원	3,026	3,326	6,157	4,027	4,120	2,630	2,869	2,366	1,429	1,750	1,677	−7.3
	2.9	2.5	4.5	2.7	2.4	1.4	1.4	1.1	0.6	0.6	0.6	−14.8
환경분야 지원	1,525	2,005	2,361	3,146	3,597	4,508	5,123	6,156	6,409	8,209	9,130	18.3
	1.4	1.5	1.7	2.1	2.1	2.5	2.6	2.9	2.8	2.9	3.2	8.8
사회보장분야 지원	8,176	11,649	12,932	13,535	17,487	16,873	20,601	23,807	27,474	33,304	38,792	14.3
	7.8	8.8	9.4	9.2	10.0	9.2	10.3	11.2	12.0	11.6	13.7	5.0
주택분야 지원	533	434	520	406	661	1,330	889	1,382	1,518			19.6
	0.5	0.3	0.4	0.3	0.4	0.7	0.4	0.6	0.7			10.6
국방부문 지원	3,808	4,856	5,398	6,324	5,853	5,520	5,602					2.9
	3.6	3.7	3.9	4.3	3.3	3.0	2.8					−5.2
일반행정 지원	1,089	1,282	1,320	648	451	399	472					−18.1
	1.0	1.0	1.0	0.4	0.3	0.2	0.2	0.0	0.0			−24.6
기타 지원	264	304	359	298	2,054	984	897	3,364	3,056	3,391	3,996	33.1
	0.3	0.2	0.3	0.2	1.2	0.5	0.4	1.6	1.3	1.2	1.4	22.4

주 1. 2006년 실적부터 구조조정 지원은 금융산업 지원과 통합하고, 국방부문 지원·일반행정 지원을 농어민 지원·설비투자 및 기타 지원으로 재분류

2. 2008년 실적부터 주택분야 지원 및 환경분야 지원을 주택·환경분야 지원으로 재분류(위 표에서 주택분야 지원은 환경분야 지원에 포함)

3.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감율, 단 구조조정·국방·일반행정 분야는 2005년까지 증감율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위의 표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기능별 조세지출 금액과 금액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준다. 우선 저축지원의 경우 이미 언급한 대로 세금우대저축제도의 정비와 감면축소,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감면금액과 금액비중이 각각 −4.4%, −12.1%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근로자 지원과 농어민 지원분야는 감면규모가 각각 28.4%, 8.8%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험료·교육비 등 근로소득 공제의 증가추세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주요 감면항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개발 지원분야 중 중소기업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이 각각 16.2%, 13.2%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지원항목의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개발 지원분야 중 금융산업과 구조조정 지원분야는 감면규모가 각각 −14.2%, −54.7%로 크게 감소하였다. 금융산업과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 2009년 0.2%로 크지 않는 편이지만, 해당분야 지원금액의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활성화되었던 금융산업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00년 이후 폐지되었던 상당수 구조조정지원 세제들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9년 다시 도입되어 운용 중이다. 사회개발 지원분야 중 교육·문화·체육 분야의 경우 조세지출금액과 비중이 각각 −7.3%, −14.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7년 말 대학교원 등에 대한 연구비 등 비과세 한도를 축소 조정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체 감면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 및 사회보장분야의 경우 조세지출 금액이 각각 18.4%, 14.3%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조세지출규모에서의 비중도 각각 8.8%, 5.% 증가하였다. 환경분야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 및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경로우대자·자녀양육비·부녀자에 대한 추가공제 등의 감면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6]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소분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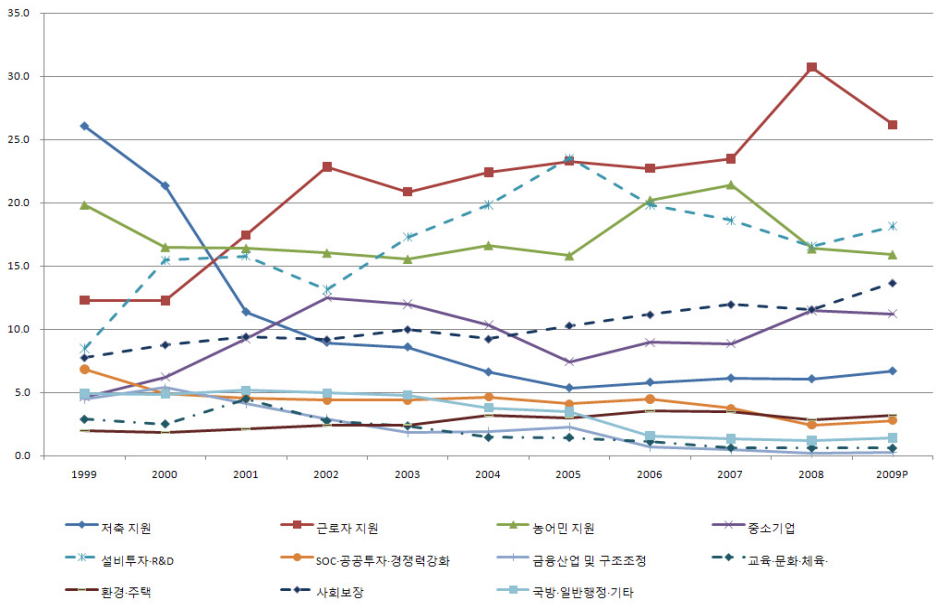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위의 그림은 이상 논의한 세부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저축지원 분야의 하향추세와 근로자지원 분야의 상승추세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설비투자·R&D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감면비중 추이가 상당히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상황과 감면율 등에 영향을 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감면항목의 변동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마. 조세지출 항목별 현황

(1)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2000년 이후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연도별 조세감면 항목수 추이를 보면, 2000년 230개 항목에서 2001년 273개 항목으로 43개 항목이 증가한 이후 2004년 220개 항목으로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6년 230개 항목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7년 219개, 2008년에 189개, 2009년 180개로 조세감면 항목수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항목수	230	273	269	254	220	226	230	219	189	180
감소	–	4	13	26	38	7	5	38	44	34
증가	–	47	9	11	4	13	9	27	14	30

주 1. 2001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에 관세감면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관세 관련 15개 항목이 추가, 직·간접세 항목은 32개 항목이 추가
2. 2007년의 경우 특소세(개소세)·교통세 항목을 부가가치세 항목과 통합시키고, 정부부처의 거래 및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거래에 대한 조세지출은 누락시키는 등의 변화가 발생
3. 2008년의 경우도 조세지출 항목간 통합이 발생
4. 2009년의 경우 일몰종료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조세감면 실적이 있는 항목들과 조세지원의 성격상 폐지이후에도 장기간 감면금액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 항목수 집계 대상에서 제외

자료: 박명호·전병힐(2009) 재인용.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

그러나 2001년도 273개에 이르는 조세감면 항목수가 2009년 180개로 줄어든 것이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 이후 조세지출보고서 상의 조세감면 항목수 변동추이는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일몰종료)와 같이 비과세·감면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항목들이 기존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폐지되지 않은 기존 항목을 삭제 또는 기존에 감면되던 항목을 사후적으로 추가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범위와 분류 등 관련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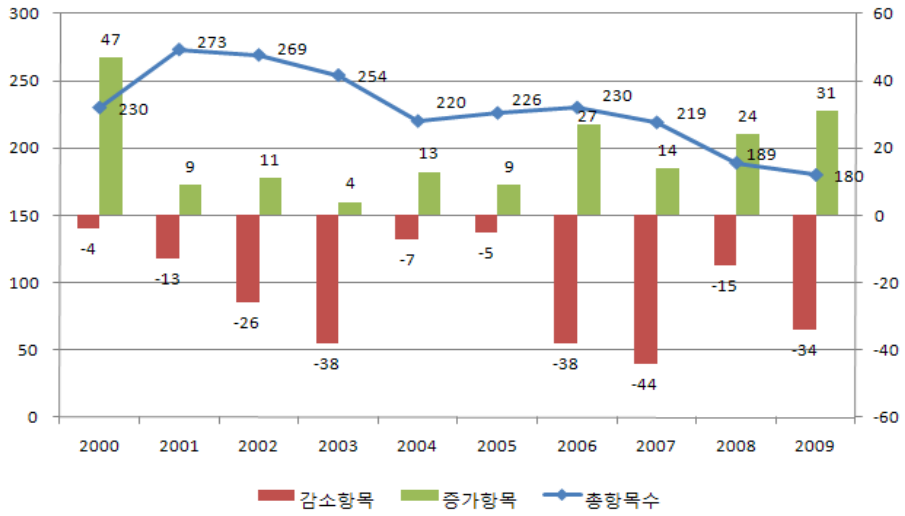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특히 항목수 변동이 크게 나타난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2007년도 65개 변동항목(감소 38개, 증가 27개) 중 46개(감소 29개, 증가 17개)항목이, 2008년도 58개 변동항목(감소 44개, 증가 14개) 중 28개(감소 26개, 증가 2개)항목이 조세감면제도의 신설 또는 폐지(일몰종료)와 관계없이 기존 항목의 통합 또는 조세지출 범위에서 제외, 기존 감면항목의 사후추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를 보면, 2010년 현재 폐지(일몰종료)되지 않고 존속하는 32개 조세감면 항목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2007·2008년 조세지출보고서부터 삭제되었다.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 23개 항목이 유사항목 간의 통합으로 인해 12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보고서 중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 17개 증가항목의 경우 기존의 감면조항에 근거하여 이미 감면되고 있는 항목을 2007년부터 조세지출 항목에 신규로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2009년(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일몰종료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단기적으로 아직 조세감면 실적이 있는 항목들과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거나 일부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같이 조세지원의 성격상 폐지 이후에도 장기간 감면금액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조세지출 항목 수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집계기준의 변화가 있었다.

[표 6] 2007 ~ 2009년도 신설·폐지 외의 사유로 인한 조세지출 항목 변동내역

구 분		항 목	사 유	비 고
2009	감소항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임의삭제	법인세법 조문이관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임의삭제	
		기타 근로소득 비과세	임의삭제	
		국가, 지자체 등에 SOC시설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임의삭제	
	증가항목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존항목추가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분리	
2008	감소항목	투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임의삭제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임의삭제	소득세법 조문이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임의삭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임의삭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운영비 손금산입	임의삭제	
		자선구호단체사업 관련 서류 인지세 비과세	임의삭제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임의삭제	2009년 현재 적용중단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이자소득 비과세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항목통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항목통합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항목통합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배당소득 비과세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고수익, 고위험투자신탁 등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통합	배당소득 저율과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통합	
		초중등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항목통합	기타 근로소득 비과세
		방송통신신문기자 취재수당 비과세	항목통합	
		농협등 조합원예적금 증서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농어촌정비사업 등 관련 재산권이전문서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구 분		항 목	사 유	비 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한국벤처투자조합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증권투자목적 설립 외국법인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부실금융기관 등 보유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예금보험공사 등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중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증권투자회사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금융기관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교환, 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연기금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외국인 관광숙박업 유흥음식행위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외국군 주둔지역내 과세유흥장소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외국인 한국음식점 유흥음식행위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외교관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증가항목	영농·영어 조합원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분리	
		세금우대종합저축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분리	
2007	감소항목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특소세, 교통세 면제	항목통합	각각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에 통합
		농어업용 석유류 특소세 면제	항목통합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특소세 면제	항목통합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면제	항목통합	장애인승용자 등 면제 항목에 통합
		소방공무원이 받는 화재진화수당 비과세	임의삭제	
		공공용지 등 국가 등에의 양도증서 인지세 면제	임의삭제	
		철도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임의삭제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임의삭제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임의삭제	
		기업공개 등을 위한 주권매출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임의삭제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임의삭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임의삭제	
		석유화확 공업용 원료 석유류 면제	임의삭제	
		학술연구, 교육 및 실험용물품 관세 면제	임의삭제	
		학술연구, 교육훈련용품, 표본, 참고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임의삭제	

구 분		항 목	사 유	비 고
		국제운동경기용 운동용구 관세면제	임의삭제	
		수질측정, 보전, 향상을 위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임의삭제	
		공익법인, 공익신탁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임의삭제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세 비과세	임의삭제	
		군용석유류 부가가치세 영세율	임의삭제	
		군용석유류에 대한 특소세, 교통세 면제	임의삭제	
		군수품 관세면제	임의삭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비상통신용품 등 관세면제	임의삭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물품 관세면제	임의삭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임의삭제	
		통화안정증권 인지세 면제	임의삭제	
		국제금융기구 발행채권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임의삭제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임의삭제	
		정부수입 간행물, 음반,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임의삭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기존항목추가	2004.1.1 신설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2004.1.1 신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2001.8.14 신설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기존항목추가	2000.1.1 신설
	증가항목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존항목추가	2000년 이전부터 감면 항목
		투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항공기 제조, 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수립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예방물품에 대한 과세감면	기존항목추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기존항목추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항공기 발착, 항행안전물품 등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기존항목추가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는 각국의 조세체계와 그 발전과정이 상이한 만큼 국가 간에 합의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국가가 처한 조세체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지출에 대한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조세감면 항목의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 항목의 임의적인 변경은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감면 즉 조세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27조)이나 '국세감면율 한도제(제88조)'하의 국세감면율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조세지출 항목의 포괄범위 등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때에 연간 조세지출규모(국세감면액)와 이에 기초한 국세감면율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1]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와 항목별 감면규모의 추계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

(2)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은 총 180개 항목이다. 조세지출금액에 대한 2009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조세지원 금액이 큰 상위 20개 항목을 보면,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2조 1,269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2조 3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 8,934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1조 8,779억원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감면금액이 큰 상위 20개 항목의 2009년도 총 감면액은 22조 7,876억원으로, 이는 2009년도 총 조세지출금액(30조 621억원)의 7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1)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조세지출의 포괄범위에 관한 문제는 보고서의 제2장 제1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표 7]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2009년 기준)

(단위: 억원)

조세지출 항목	수혜자	2009 실적	분 류(예산분야)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	21,269	보건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20,03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8,934	일반공공행정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거주자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18,779	농림수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공업·건설업·엔지니어링사업 등 영위 내국인	15,5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	15,287	농림수산
농 · 축산 ·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13,924	농림수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12,79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	12,299	교육
이자소득 비과세		10,777	사회복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10,03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가족중 경로우대자가 있는 거주자	8,400	사회복지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거주자	7,818	사회복지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또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등	7,29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	6,881	보건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사회복지·종교·교육 등 관련 법인, 이재민·국군장병 등	6,398	사회복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5,986	교통 및 물류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5,708	보건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5,188	환경
근로장려금(EITC)지급	저소득 근로자	4,537	사회복지
합 계(2009년 총 국세감면금액 대비 비중)		227,876(73.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

마. 소결

조세지출보고서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0여 년 간 조세지출의 운용에 관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국세감면액의 증가율(9.9%)은 같은 기간동안 총 국세수입액의 증가율(6.6%)을 상회하고 있다. 연간 조세감면액 상위 20개 주요 조세감면 항목들이 총 국세감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7.9%, 2005년 74.0%, 2009년 73.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0여 년 간 높은 국세감면액 증가추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감면금액이 큰 기존 항목들의 감면 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0년 이래 12~13% 중반 수준을 유지하던 국세감면율이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및 2009년도 국세감면율은 각각 14.7%, 15.9%로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율 한도인 2008년 13.6%, 2009년 14.0%를 모두 초과한 수치이다. 이와 같이 최근 조세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8년 이후 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은 물론 '유가환급금' 및 '노후자동차 교체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등 상당수 조세감면 제도들이 적극 활용된 데에 주로 기인한다. 그 밖에 올해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등 그동안의 일부 국세통계집계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세감면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던 조세감면 항목 또는 세목을 추가하는 등 국세감면액의 집계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연도별 조세감면 항목 수는 2001년도 이후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세감면액의 증가추이와 대비된다. 즉 2001년도 273개에 이르던 조세감면 항목수가 거의 매년 꾸준히 감소하다 2007년 219개, 2009년에 180개로 조세감면 항목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 항목수 변동추이는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일몰종료)와 같이 비과세·감면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항목들이 기존 항목들 간의 통합, 폐지되지 않은 기존 항목의 삭제 또는 기존에 감면되던 항목들의 사후적인 추가 등 조세지출에 대한 범위와 분류 등 관련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 조세지출예산제도 해외사례

본장에서는 OECD 주요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의 최근 조세지출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배경과 조세지출 정의, 추정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국가들의 운용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세지출예산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호주

(1) 배경 및 운용

조세지출 총계 작성 초기인 1980년부터 1984년 동안에 예산서(Budget Statements)의 부록으로 조세지출 항목 및 비용이 수록되면서부터 호주 재무부는 매년 자발적으로 조세지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여 왔다. 의회 역시 자세한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86년 조세지출예산서와 관련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에 따라 세부적인 조세지출 추정치와 관련된 기준조세제도를 제공하는 별도의 문서인『조세지출보고서(The Tax Expenditure Statement)』가 발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 제정된 예산법령헌장 1998(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의거하여 조세지출예산서의 법적인 강제력을 두었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매해 작성되는 예산서 외 별도의 문서로, 당해 회계연도와 향후 3년의 추정치를 담도록 하였다. 조세지출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직접지출과 대비하여 조세지출의 유용성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둘째, 조세체계의 설계에 기여, 대중토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조세지출의 정의 및 보고서 구조

특정행위나 납세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체계를 기준조세(norm)라 한다. 이때 기준조세로부터 벗어나 특정행위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감해주는 것을 조세지출로 정의한다.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을 세목별로 구분한 후 그에 따른 기능별 범주에 따라 조세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포함되어 있는 세목을 보면,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급여과세(fringe benefit), 사업소득세(business tax) 및 소비세가 있다.

(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호주는 세수손실법(revenue foregone method)을 조세지출 추정에 사용한다. 세수인식에 있어서 조세채무 방법(tax liability method)에 기초한 발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채무 방법에 의하면 조세채무를 부과하는 시점과 해당 조세를 징수하는 시점 중 먼저 일어난 시점에서 조세수입을 인식한다. 2008년부터는 일부 조세에 대하여 세수증가법(revenue gain method)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있다. 조세지출 규모는 실제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호주의 조세지출 항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2002년 262개의 조세항목에서 2008년 342개로 82개나 증가하였다. 조세지출총계는 2004년까지 다소 안정적이나 그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총 조세지출 비중은 2002년 4.2%에서 2008년 7.1%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 캐나다

(1) 배경 및 현황

1970년대 캐나다에서는 물가상승과 고용축소 등으로 재정지출수요가 증가한 반면, 세수의 감소로 재정적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해 조세지출을 억제하고, 그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9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 조세지출예산(Government of Canada Tax Expenditure Account)』이 발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초반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인 통합관리시스템(envelope system)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캐나다의 조세지출 추정치는 예산안과는 별개의 문서로 작성된다. 따라서 예산과정과는 연계되지 않고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의회에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매해 작성되며, 1997년부터 이 보고서는 현 회계연도와 과거 5년 추정치, 향후 2년 예측치를 함께 담고 있다. 조세지출보고는 역년(calendar year)에 기초하며, 매 4년마다 조세지출의 상세정보를 기록한 참고서를 발간한다.

(2) 조세지출의 정의 및 구조

캐나다의 기준조세체계(benchmark)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에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기본 조세구조를 말한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정된 Haig-Simons 소득 정의에 기초하여 과세된다. 소비세(General Service Tax ; GST)는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다단계 부가가치세로, 목적 기준을 정하여 과세된다. 조세지출은 이러한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나 특정 행위나 개인에게 주는 혜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조세지출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로 세목을 나누어 규모가 측정된다. 그리고 각 세목 안에는 기능별로 조세지출 항목이 세분화 되어있다. 또한 조세지출보고서는 구조항목(structural items) 뿐만 아니라 비망항목(memorandum items)[3]인 조세특혜를 포함하고 있다.

(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캐나다는 조세지출의 규모 추정에 세수손실법(revenue foregone method)을 사용하고 있다. 조세지출 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조세지원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연방세입을 추정한 후, 이 계산값과 실제 세입의 차이를 조세지출로 본다. 이때 납세자의 가능한 행태변화, 그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 추정치는 현금흐름에 의해 계산되며, 각각의 조세지출은 독립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떤 조세지출 조합 간에도 상호작용효과는 없다. 또한 조세지출 추정방법은 굉장히 꼼꼼히 문서화되어 있다(Seguine and Burr, 2004). 개인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납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모형을 추정하는데, 그밖에 재무부가 수집한 관련 자료, 다양한 원천에서 구해진 데이터와 조사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비세의 경우 다른 별도의 모델을 이용하여 도출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캐나다의 조세지출 항목 수는 1994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1994년부터 2004년 동안, 소득세의 경우 126개에서 143개로, 소비세의 경우 31개에서 32개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조세지출 규모는 1994년 13.8%에서 2004년 10.4%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8~2008년 사이에는 조세지출 추정치가 다소 안정적이다. 또한 2004년 개인 소득세부문에서는 노후보장과 지방재정관련 조세지출이 가장 크다.

---

3) 예를 들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의 경우 비망항목 내에 기재되어 있다.

다. 독일

(1) 배경 및 현황

1959년 독일 재무부는 의회 요청으로 조세지원에 의한 세입손실을 추정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조세지원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금이라 지칭하였다. 1967년 공식적으로 조세지출보고서가 제출된 이래, 현재까지 직접 보조금과 조세특혜를 모두 포함한 보조금보고서(Subsidy Report)의 형태로 작성하고 있다. 보조금보고서는 예산안의 일부로서, 보조금 및 지출경감을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작성된다. 이것은 현 회계연도와 과거 2년의 조세지출, 향후 1년 예측치를 함께 다룬다. 중앙정부의 20개 가장 큰 조세지출 항목은 매해 예산안에 첨부되며, 직접지출 정보에는 통합되지 않는다. 2006년 연방내각은 보조금 지급의 시간적 제한을 둠과 동시에 이를 점차 삭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보조금이 조세지출이 아닌 직접지출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 조세지출의 정의 및 구조

독일은 법적으로 조세지출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단, 기업과 산업부분에 주어지는 직접 또는 간접적 보조금을 조세지출로 간주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독일의 조세지출은 예산상의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보조금보고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유세, 사업소득세, 매상세(turnover tax), 보험세, 자동차세, 소비세, 복권세, 재산세, 상속세 등 모든 세목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지방조세의 경우 언급되지 않는다. 조세지출은 산업별 그리고 이러한 부문 안에서 세목별로 더욱 세분화되어 보고된다.

(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독일은 현금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을 사용한다. 이때 조세조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납세자의 행동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특히, 기준조세체계의 구조적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여겨지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조세지출 추정치를 계산한다. 그 규모는 각각의 조세지출의 특성에 맞는 서로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행정당국의 공식 추정자료, 직접 납세자료, 산업 통계치, 소득세 및 법인세 모형에 의존하여 계산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독일의 조세지출 항목 수에는 매해 큰 변화가 없다. 2006년에는 86개의 조세지출 항목이 보고되었는데, 2003년 82개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조세지출규모 역시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DP 대비 비중이 1980년 0.8%, 2006년 0.74%로 보고되었다. 1995년과 1996년에는 0.49%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소유주택에 대한 조세지출에 의한 것이다.

라. 영국

(1) 배경 및 현황

영국은 1979~1980년 의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지출백서에 조세지원과 그 우대목록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영국에서 조세지출 보고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나 세출의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예산과정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세지출보고서는『재무제표와 예산서(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에 참고자료로 첨부되며, 개인 소득감면이나 혜택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매해 가을『조세조견표(Tax Ready Reckoner)』상에 보고된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매해 작성하여 이를 예산과정의 토의와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2) 조세지출의 정의

조세감면(tax relief)은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공공지출에 대한 수단으로 보는 조세감면만을 고려한다. 두 번째는 조세 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의 세금감면이나 집행을 간소화한 세금감면을 구조적 조세감면(structural reliefs)이라 하여, 조세구조의 핵심적인 요소에 포함한다. 그리고 제 3범주(relief with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reliefs)는 구조적 요소와 지출적요소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조세감면이 항상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생겨난 요소이다. 조세지출은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그 내용이 세목에 따라 분류되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가보험기여금, 증여세, 인지세, 자동차판매세 등이 있다.

(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영국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손실법을 사용하여 조세지출을 추정한다. 이때, 납세자의 행동에 변화는 없으며, 각각의 조세지원은 다른 조세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별도로 추정된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세수손실은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세지출규모를 계산할 때, 국민계정자료나 세무행정상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지원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연방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를 조세지출로 추정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조세항목 수는 2006~2007 회계연도에 소득세에 대해서는 189개, 다른 조세에 관해서는 151개, 구조적요소와 지출적요소를 가지는 조세감면에 대해 42개가 보고되었다. 조세지출규모는 소득세의 경우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며, 비소득세의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2년도에 제 3범주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GDP 대비 8.2%였고, 2006~2007년에는 8.3%로 나타났다. 동기간, 비소득세의 경우 2.1%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마. 미국

(1) 배경 및 현황

1967년 당시 재무성 차관보였던 Stanley. S Surrey에 의해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지원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1969년 최초로 조세지출에 대한 보고서가 재무부의 『연차보고서(the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tate of the finances for Fiscal Year 1968)』에 발표되었다. 그 후 1974년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의 제정과 더불어 조세지출 보고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조세지출보고서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며 매해 『예산분석서(Analytical Perspective)』라 불리는 예산안의 부속서류 중 일부분으로 포함된다. 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 정보는 조세개혁 및 적자축소를 목적으로 작성되며, 행정부나 의회의 예산과정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조세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과거 2년 추정치, 향후

4년의 예측치를 담고 있다. 또한 매년 예산서에는 지난 해 재정된 새로운 조세지출 항목을 첨부하는데, 조세지출규모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조세지출의 정의

조세지출은 과세이연, 특별세율을 제공하거나 비과세, 공제, 면제를 허용하는 연방법조항에 의한 세입손실을 의미한다. 이 조세지출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정의되며, 예산상의 기능별 개별 조세지출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 및 증여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포함한다.

현재, 두 가지 비교기준을 사용하여 조세지출의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상적 과세기준(normal tax baseline)과 준거세법(reference law baseline)이 있다. 정상적 과세기준은 헤이그-사이먼(Haig-Simons)의 소득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소득을 주어진 기간 동안 변화한 순부(net wealth)와 소비의 합계로 정의하는 포괄적 소득세의 실제 운용형태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의회예산법에 정상조세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법의 특정조항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많았다. 그리하여 이와 함께 관계법령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관계법령기준은 실용적 기능을 위해 제정된 세법에서의 특별한 예외사항으로 제한한다.

(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현재 미국은 현금을 기준으로 한 세입손실법, 현재가치법 등을 사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다. 이때 다른 조세조항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전체 규모는 개별 조세지출 비용의 단순합으로 계산되며, 이 때문에 조세조항 상호간에 영향이 있을 경우 실제 전체 조세지출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된다. 1983년 이전에는 세입손실법 만을 이용하였고, 1983년 직접지출등가법(outlay equivalents)이 조세지출의 예산효과에 대한 척도로서 추가 도입되었다. 직접지출등가법은 납세자가 세제상 우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세후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지출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1996년 과세이연을 야기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 현재가치법을 도입하였다. 최근 추세를 보면 2008년부터는 직접지출등가법에 의한 조세지출예산을 보고하지 않는데, 이는 직접지출등가법과 세입손실법에 의한 추정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조세지출은 납세신고자료를 사용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에 기초하거나, 국민계정자료 또는 산업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1990 회계연도 이후에 조세지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입 대비 비중을 보면 1990년 이후 30~35%대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 항목의 개수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1985년 104개에서 2010년 165개로 그 수가 1.6배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개 국가 및 그 밖의 OECD 국가의 조세지출제도의 운용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OECD 국가들의 조세지출보고서

국가	목적/용도	법적요건	예산과의 관계	빈도	측정방법
호주	직접지출과 대비하여 조세지출의 유용성 평가를 용이하게 함. 조세체계의 설계에 기여, 대중토론을 위한 자료를 제공	법적의무	별도의 정부문서	매 년	발생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 2008년부터 : 일부는 세수증가법을 적용함
캐나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의회와 대중에게 제공함.	법적의무가 아님	예산과정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음. 다만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 참고자료로 사용	매 년	현금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
독일	보조금 및 지출 경감	법적의무	보조금보고서라 불리는 예산안의 일부임.	2년 주기	현금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
한국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조세조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법적의무	국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로 대중들은 열람불가. 2010년부터는 예산서에 첨부	매 년	세수손실법
영국	매해 예산관련 토의와 논의를 용이하게 함	법적의무는 아니나 지출의원회에서 권장	예산과정과 관계없으며, 예산서에 첨부되지 않음	매 년	발생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
미국	세제개혁 틀짜기 및 적자절감	법적의무	예산서의 일부임. 하지만 예산과정에 통합되지는 않음	매 년	현금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 및 현재가치법

주 : 한국은 2010년 조세지출보고 시스템과 조세지출 정책을 재정비함. 표의 모든 정보는 2010년 재검토과정 이전의 진행 중인 절차를 반영한 것임.
자료 : Jon Craig and William Allan (2004)

[표 9] OECD 국가들의 조세지출 : 기준조세(benchmark) 및 분류

국가	기준조세 정의	세목	포함정부	분류
호주	기준조세체계에 개념적 정의(conceptual approach)를 적용함.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실용적인 사안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된 Haig－Simons 소득개념을 사용함.	사용되는 8가지 기준조세체계는 3가지 범주로 구분. 1)소득세 기준 : 개인소득세, 법인세, 연금, 부가급여(fringe benefit), 자본소득세 2)소비세 기준 : 물품세(commodity tax), 천연자원과세, 소비세 3) 외부효과 기준(2009년부터) : 배출권 거래	중앙정부	주요 경제적 기능별, 납세자 유형별, 연관된 특정 기준조세제도별.
캐나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정된 Haig－Simons 소득정의에 기초함. 소비세(GST/HST)는 국가적 과세기준을 사용함.(광범위한 조세기준, 단일세율(7%), 과세원칙에 따라 거둬진 다단계의 부가가치세, 사업투입물의 경우 세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사용)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GST/HST)	연방정부	조세 항목 그리고 조세항목 안에서 기능별로 세분화(예: 교육, 고용)
독일	조세지출은 직접지출 보조금 혜택산업(expenditure subsidy benefiting industry)과 비슷한 맥락으로 특정 지어짐. 가족세제감면과 연금의 경우, 조세지출로 나타나지 않음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유세, 사업소득세, 매상세(turnover tax), 보험세, 자동차세, 소비세, 복권세, 재산세, 상속세	중앙정부 (연방정부)	산업별 그리고 이러한 부문 안에서 세목별로 더욱 세분화, 조세항목
한국	조세지출을 200개의 항목 명단으로 명시된 관계법령기준체계에 기초하여 계산함.	개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중앙정부	조세항목 및 기능별
영국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적 정의와 함께 직접지출보조금(expenditure subsidy)을 함께 고려함. 공공지출에 대한 조세감면만이 조세지출로 고려됨. 조세 구조에서 필수적인 세금감면이나 집행을 간소화한 세금감면을 구조적 조세감면(structural reliefs)이라 함. 그리고 제 3범주는 구조적 요소와 지출적요소를 모두 가짐.	개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인지세, 국가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부가가치세	중앙정부	조세지출, 구조화된 세액경감 또는 조세지출과 구조화된 세액경감요소를 모두 가진 세액경감으로 구분
미국	소득세에 대하여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음. 정상적 조세기준(normal tax structure)는 Haig－Simons의 소득개념에 기초함. 관계법령기준(reference)은 실용적 기능을 위해 제정된 세법에서의 특별한 예외사항으로 제한됨. 증여세(transfer tax)는 별도의 기존조세체계가 적용되지만, 소비세나 관세, 사회보장기여금과 같은 간접세의 경우 조세지출의 기준이 없음.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증여세, 사회보장기여금	연방정부	조세항목, 예산상 기능별

자료 : Jon Craig and William Allan (2004)

나. 시사점

OECD 주요국들은 조세지출제도를 살펴본 결과, 각 국가들의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통적으로 조세지출을 직접지출과 별도의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재정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둘째, 조세지출을 세수확보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주요국들의 조세지출 규모와 항목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각 나라들은 각 국가의 재정상태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한 조세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캐나다는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던 1970년대 말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하여 평가·관리하는 통합관리제도(the envelope system)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별개의 문서로 발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Ⅱ.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

가. 일반적인 논의

일반적으로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세율 등 세법상 일반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례규정의 형식으로 개인 또는 기업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은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정책대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y)으로서 재정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특정정책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소관부처의 예산사업의 형식으로 직접지출(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조세지출은 조세감면의 근거와 내용이 각종 조세관계 법령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

OECD(1996)는 비과세·감면 즉 조세지출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조세체계(tax system into a benchmark or norm)라 정의하고, 조세체계가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때에 조세지출이 존재한다고 본다. 기준조세체계로는 기본 세율구조, 회계관행, 행정의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본 소득세율 구조는 기준조세체계를 구성하지만, 저축을 증진하거나 영세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 저율과세 제도는 조세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과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각 국의 관행은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각국의 조세체계와 그 발전과정이 상이한 만큼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도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는 늘어나는 조세지출을 억제하고 행정 각부의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1968년, 1979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세지출을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각 세목에 대해 해당 세율을 적용

---

4) 일반적으로 OECD 등 국제기구 및 각 국에서는 조세체계를 통한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 through the tax system)이라는 의미에서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는 기본 조세구조에서 변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예산상 직접보조금과 대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보조금으로서 조세지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독일의 경우 '개별 조세지원이 지출 측면에서 직접지원과 같이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조세지출을 파악하고 있다(전승훈, 2004; 박명호·정희선, 2006).

그 밖에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자들도 조세지출에 관하여 조금씩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데, Surrey(1970)는 '각종 사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을 지칭하는 세제상의 특별규정'으로, Boadway and Flatters (1988)는 '조세체계상의 규범으로부터의 변칙(anomaly) 또는 일탈(deviation)의 결과 받지 않기로 한 수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이영조·오시환, 1999).

이와 같이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조세지출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OECD 1996; 전승훈 2004).

첫째, 수혜자집단의 특정성으로,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활동 및 과세계급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조세지출이 아닌 기본조세체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다른 지원수단으로의 대체가능성으로,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정책목적은 예산의 직접지출이나 금융지원 등 조세가 아닌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조세지출의 폐지가능성으로,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한 후 혹은 달성하기 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수혜계층을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항구화·만성화되어 이를 없애는 것이 실현가능하지 않다면 조세지출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 밖에 조세지출의 주요 특징으로 조세지출규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당 세목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 조세지출의 준거기준인 기준조세체계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조세지출이 제공하는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조항이 동일한 조세체계 내에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와 포괄범위

(1)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 이전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해 온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도입초기(1999년 및 2000년)의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지출에의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개별세법 상의 규정은 해당 세목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의 포괄범위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충분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소득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조세지출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및 여객운송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기초생활 필수품 성격인 점, 수혜계층의 특정성이 없는 점, 폐지가 곤란한 점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2)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의 정의 및 포괄범위에 대한 기준의 부재

현행 「국가재정법」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제출을 명시하면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대상인 조세지출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5]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도 무엇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 국가재정법이 규율하고자하는 조세지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현행 조세법 체계로부터 무엇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올 해 처음으로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의 조세지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는 그 포괄

5) 국가재정법 제27조제1항, 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올 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 항목들을 볼 때, 그동안 조세법령에 근거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조세지출로 집계되지 않았던 일부항목들이 새로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조세지출로 분류되고 있던 항목들이 조세지출예산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6)]

따라서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의 기준조세체계 또는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그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 항목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 항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정책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재정지원수단으로서 조세지출은 매년 의회의 심사를 받는 예산지출과 달리 일몰규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주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조세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의 존재로 인해 한번 설치되고 나면 지원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폐지되지 않고 항구화하는 속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올해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와 같이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의 항목들을 조세지출예산서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재정정보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용을 어렵게 할 소지가 크다. 이미 언급한 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조세지출보고서의 운용관행을 보면, 조세지출의 기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운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와 같이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들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잦은 변동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다.

물론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개별국가가 처한 조세체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지출에 대한 기준의 변경

---

6)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조세지출로 집계되지 않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09실적, 2,249억원)'가 신규로 추가되었고, '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와 같이 개별소비세 등 본 세목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 추가로 감면되는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의 감면실적을 일부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집계에 반영하였다는 점 등 경미한 변화가 있었다.

에 따라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 항목의 임의적인 변경은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세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세감면율 한도제(제88조)'의 운용에 있어 국세감면율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국세감면율 정보의 기초가 되는 매년도 국세감면액 총액은 조세지출의 범위가 확정될 때 비로소 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지출 항목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때에 연간 조세감면규모(국세감면액)와 이에 기초한 국세감면율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7)]

따라서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운용하되, 사후적으로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선정에서의 고려요소

(1) 기준의 명확성

이미 언급한 대로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 간에 합의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의 조세체계와 그 발전과정이 상이한 만큼 개별국가가 처한 조세체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준조세체계 또는 조세지출에 대한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세지출항목의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이유를 감안할 때,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의 범주에 관해 널리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를 위해 조세지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각 세목별로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확립된 기준에 의거하여 현행 조세법 조항 중에서 조세지

7)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출 항목을 식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박명호 외 1인, 2009). 이 과정에서 기존의 운용관행을 고려하여 현행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지출 항목들이 주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국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OECD가 제시한 조세지출의 특징들(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이 조세지출에 대한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임주영, 2010).

무엇보다 조세지출은 국가가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수단의 일환으로 특정계층 및 집단에 부여하는 조세특례를 통한 지원으로서 예산지출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대체가능성이 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책적 관리의 필요성이 큰 항목들이 조세지출예산서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은 해당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법에 있는 각종 비과세·공제 등 감면조항들이 문제가 되는데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있지만 개인 또는 가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에 대한 공제로 간주할 수 있는 일부항목 등에 대하여는 정책관리의 대상으로서 조세지출의 범주에서 제외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8]'와 같이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집단에 제공되는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이 되는 조세지출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관리 대상이 되는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일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각종 비과세 조항들 중 '전답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등 일부 사업소득과 '대학교원 등 연구활동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조항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1개 이하 주택임대소득', '학자금 비과세' 등 일부 항목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되어 있다.[9] 그러나 조세지출의 범주를 선정함에 있어 현재 조세지출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들과 조세지출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들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행과 같은 분류기준에 근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9) 현재 '취재·벽지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타 근로소득 비과세' 등 현재 조세지출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들 중 일부는 2006년까지 조세지출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표 10] 조세지출예산서의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항목의 조세지출 포함여부
(기준 불명확)

(단위: 억원)

항목		근거조문	조세지출예산서 포함여부 ('09년 실적)		비고
사업소득등비과세	전답임대소득	소득세법§12·2·가	○	추정곤란	
	1개 이하 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12·2·나	x		'06보고서까지 기재 (추정곤란)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12·2·다	○	추정곤란	
	전통주 제조소득	소득세법§12·3의2·라	○	추정곤란	
	산림소득	소득세법§12·2·마	x		
근로소득비과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12·3·가	x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 §12·3·나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소득세법 §12·3·다	x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소득세법 §12·3·라	x		
	고용보험법·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소득세법 §12·3·마	x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소득세법§12·3·바·사	x		
	비과세 학자금	소득세법 §12·3·아	x		
	법령 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소득령 §12·1	x		
	선원법에 의해 받는 식료	소득령 §12·2	x		
	일직료, 숙직료 등	소득령 §12·3	x		
	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소득령 §12·4	x		
	병원 · 시험실 · 금융회사 등 착용 작업복 · 피복 등	소득령 §12·8	x		

항목		근거조문	조세지출예산서 포함여부 ('09년 실적)		비고
근로소득비과세	함정근무수당·경호수당·화재진화수당·승선수당 등	소득령 §12·9~11	x		함정근무수당 등 일부 항목 '06보고서까지 기재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등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령 §12·아·12	○	528	
	취재수당, 벽지수당	소득령 §12·14·15	x		'06보고서까지 기재 (27)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소득령 §12·아·15	x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소득	소득세법 §12·16	x		
	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12·카·타·하	x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주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12·파	x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 §12·거	○	1,007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소득세법 §12·너	○	5,708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소득세법 §12·더	○	827	
	식사대, 현물급식 등	소득세법 §12·러	x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법 §12·머	x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소득세법 §12·버	x		

(2) 정보의 투명성과 충분성[10)]

현실적으로 조세지출의 포괄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OECD의 정의에 따를 때, 우선 기준조세체계를 정의해야 하고 현행 세법 조항들을 기준조세

10) 아래의 내용은 박기백 외(2007)을 참고·정리였다.

체계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조세지출)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이 때 조세지출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이 갖는 개념적 모호성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권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공하되, 이를 캐나다의 예와 같이 별도의 비망항목(memorandum item)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1)]

비망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필요경비적 성격이 존재하는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예를 들어 교육비는 의료비처럼 직접적인 경비로 볼 수 없지만 영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가 포함된다.

둘째, 조세지출 항목을 폐지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세지출로 간주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 밖에 손해배상금처럼 위로금 성격의 조세혜택이나 개인의 지출선택권이 없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비망항목으로 취급할 수 있다.

(3) 정보의 신뢰성

올 해부터 시행되는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제도 및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제공되는 분야별 조세지출 내역과 항목별·세목별 감면금액, 연간 국세감면총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지출 항목을 일관성 있게 관리함은 물론 조세특례에 따른 세수손실 규모를 의미하는 조세감면 정보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집계와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특정집단에 대

11) 박기백 외(2007)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기준조세체계와 광의의 조세지출로 구분한 후 광의의 조세지출을 다시 비망항목과 협의의 조세지출로 구분할 것과 이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는 협의의 조세지출뿐만 아니라 비망항목을 포함한 광의의 조세지출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감면금액이 집계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일부 누락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항목들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다음 표를 제시할 수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일부항목의 경우 해당항목이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있지만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모든 세목이 아닌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면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같이 대부분 항목들은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이다.

조세지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조세지출 항목들 중 감면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세목에 대하여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조항 등 조세지출로 볼 여지가 큰 항목들에 대하여는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되,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1] 조세지출예산서에 누락되어 관리가 필요한 항목(예시)

(단위: 억원)

조세지출예산서 누락항목	근거조문	누락금액 ('08년 기준)	비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일부세목)	조특법 § 104의8	156	부가가치세
경형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일부세목)	조특법 § 111의2	142	교육세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일부세목)	조특법 § 121의3	–	수입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일부세목)	조특법 § 126의4	611	부가가치세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조특법 § 20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특법 § 29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 85의10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법 § 86의2	–	

조세지출예산서 누락항목	근거조문	누락금액 ('08년 기준)	비고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 86의3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 증여 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조특법 § 100의2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106①6	–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특법 § 106의3	–	'07보고서까지 기재 (추정곤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조특법 § 106의5	145	2009실적(국세청)
바이오디젤(BD)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 § 111②	1,520	2009실적(지경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법 § 104조의13	–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 136③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석유류 등에 대한 교통세·개별소비세 면제	교통세법 § 15①3 개소세법 § 18①	1,25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37	–	
SOC시설로 제공한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 105①3의2	–	'07보고서까지 기재 (2,497)
철도(도시·공공·고속)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조특법 § 118①	–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 105 · 2	–	'06보고서까지 기재 (503)
군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 § 111 · 1	3,158	'06보고서까지 기재 (1,773)
군수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관세법 § 92 · 2	–	'06보고서까지 기재 (414)

주. 1. 조세지출 감면정보의 누락금액은 국세통계연보, 관계부처 등을 통해 확인된 금액으로 조세지출예산서의 연간 감면금액의 산정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밑줄표시(–)는 감면금액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임

2.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12)]

가. 조세지출추계의 필요성

2010년 10월에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가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금액과 전년도 실적을 비교하여 작성하는 형식이었으나,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추정금액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이미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세법을 개정할 때에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신설되는 혹은 일몰이 연장되는 제도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조세지출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조세지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추계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수추계 방식과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나, 세수추계를 위한 미시자료에의 접근이 어렵고, 다양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약 하에서 사용가능한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의 금액은 계산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이 숫자들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지출 규모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존에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던 방법은 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진도비를 활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2011년에 신고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전망치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그동안의 증가율 등을 활용하여 전망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 금액에 대한 평가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하므로, 본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

12) 박명호·김우철·전병힐(2008.9), 『조세지출규모의 추정방법 및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박기백·연태훈(1999), 『조세지출의 합리적 추계방법』, 한국조세연구원; 이영환·신영임(2009.9),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나.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 기법으로는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증가율 분석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진도비·증가율 분석방법이나, 향후 시계열 자료의 구축 등을 통해 회귀분석,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중기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조세원칙에 맞는 중장기 세제개편에 비해 경기 상황에 따른 잦은 비과세·감면 세법개정을 반영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에 대한 비용효과적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

회귀분석 기법은 성명재·현진권(1995)의 연구처럼 인과모형을 통해 세수를 추계하는 대표적인 세수추계기법이지만 조세지출 추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조세지출 규모와의 관계를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추정해 낸 후, 이를 사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한 조세지출의 가장 큰 단점은 세법개정 여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신설과 폐지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잦은 세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모형이 필요하다. 회귀분석에서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경제적 변수, 세법개정을 나타내는 변수, 그 외 변수들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추계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므로 이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더미 변수의 사용 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세법개정을 모형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세법개정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지출 회귀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시계열이 짧아져 의미가 있는 숫자를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단점은 박기백·연태훈(1999)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대수 선형모형을 중심으로 각 감면항목별 조세지출규모를 각종 거시경제변수에 대하여 회귀하는 방법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은 거시시계열 자료는 시간추세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귀방정식에 시간추세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차항에 1차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방법(Cochrane－Orcutt 기법)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법개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한 예측은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예를 들어, 2009년 말로 종료가 예정되었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10년 말로 연장할 경우의 비용추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된 것은 아니나,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5년 동안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다면, 비과세·감면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강한 가정은 아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규투자금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루어진다. 도입 이후, 감면율 및 대상의 변동이 다소 있었으며, 1998년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57.5%이다. 이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변화는 감면율보다는 총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 설비투자 및 무형고정투자)과 관계가 깊다. 2000~2008년 총고정자본형성 금액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상관계수는 0.85인 반면, 감면율과의 상관계수는 0.15, 전기의 감면율과의 상관계수는 0.44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종속변수로, 총고정자본형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총고정자본형성이 1억원 증가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약 158만원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전망(명목값, 2009년 0.2%, 2010년 6.1%)을 고려하면, 2009년, 2010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각각 2조 5,028억원, 2조 7,928억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금액은 2009년 실적금액은 약 2조원, 2010년 전망금액은 약 1.8조원이다. 물론 본 모형은 극히 간단한 모형을 예로 든 것이기 때문에 적합도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오차가 향후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때 회귀분석에서 제도의 변경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귀모형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표 12] 임시투자세액공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합계	증가율 (%)	소득세	법인세	총고정 자본형성	감면율
1998	649	–	119	530	–	10%
1999	1,153	77.7	137	1,016	–	10%
2000	4,388	280.6	271	4,117	1,807,476	(6/30까지) 7%
2001	7,025	60.1	247	6,778	1,874,686	10%, 공제대상업종확대[1]
2002	6,528	–7.1	219	6,309	2,060,522	10%
2003	13,019	99.4	241	12,778	2,250,763	10%, 15%[2]
2004	18,134	39.3	328	17,806	2,414,749	15%
2005	25,439	40.3	862	24,577	2,496,897	10%
2006	20,681	–18.7	787	19,894	2,606,506	7%
2007	18,247	–11.8	709	17,538	2,781,679	10%
2008	21,035	15.3	691	20,344	2,996,636	3%, 10%[3]

주 1)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 추가(2001.9.29)

2) (2003.12.30개정) 2003.7.1~2004.6.30까지 투자금액의 15%, 공제대상에 의료기관 운영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추가

3) (1)과 (2)를 합한 금액: [(1)사업용 자산 신규투자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 있는 경우: 10%] +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표 13] 회귀분석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a+b*총고정자본형성+e

	회귀계수	표준오차	t-Statistic	Prob.
총고정자본형성	0.01583	0.003653	4.332933	0.0034
상수항	–22503.24	8753.962	–2.570635	0.0370

주: R^2= 0.73, Adjusted R^2=0.69

(2)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미시모의실험모형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추계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표본자료로 구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것으로, 이러한 모의실험모형을 통하여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시모

의실험 모형을 통해 세수추계 작업을 진행하는 선진국에서는 동모형 또는 보다 단순화된 모형을 통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에 입각하여 세수추계를 행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시자료 자체의 구축이 미진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미시자료도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형의 개발과 실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법이 개정될 때 세법개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 회귀분석 방법 외에도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세법개정효과를 계산한 사례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13]에 올라온 각종「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지은 의원 대표발의안(제안일: 2008.8.20),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안(제안일: 2008.9.25) 등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세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한 예측 역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납세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계나 정부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나 각 연구원들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의 분포가 중요한 소득세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같은 자료는 조사 항목이 실제 세금을 결정하는 변수와 일치하지 않아 다소 강한 가정이 추가되는 점, 실제 세부담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통계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아 추정 오류가 커질 수 있는 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파악이 힘들다는 점 등 조세지출 추계나 세수추계의 목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한 특징들이 존재한다. 특히,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자영업자의 소득정보는 2005년부터, 1인가구는 2006년부터 포함되어 있어 그 이전의 연구는 가정의 한계가 큰 편이었다.[14]

이처럼 비용추계를 작성할 수 없거나 부정확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 자료의 부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통계자료의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

13) http://likms.assembly.go.kr

14) 이 자료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전병목·안종석(2005), 김현숙(2006), 현진권·김용대(2003) 등이 있으며, 가장 최근의 연구로 성명재(2008)는 2003년과 2006년도의 종합소득세 탈세규모를 각각 5.8조, 6.1조,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를 각각 1.4조, 1.3조로 추정한 바 있다.

(3)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증가율 분석

진도비 분석은 실제로 우리나라, 특히 정부 당국이 조세지출 규모 추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의 하나이다. 이 방법은 해당 연도의 특정 시점까지 발생할 조세지출 실적을 과거 그 시점까지의 진도비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면, 2008년 10월까지 발생한 조세지출 규모를 E라고 할 때, 2007년 10월까지 발생한 조세지출 규모가 2007년의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 대비한 비율이 p일 경우, 2008년의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계치는 E/p가 된다. p는 지난해의 진도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해 혹은 몇 개 연도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구해지며 보통 조세지출 항목 또는 세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진도비 분석방법은 조세지출 추정치의 월별 형태가 지난해 또는 과거의 평균적인 행태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조세지출의 형태가 경제환경에 따라 비교적 많이 변하지 않을 때는 예측력이 매우 높을 수 있지만, 경제환경에 따라 조세지출의 형태가 많이 변할 때는 지난 해의 조세지출 형태에 의존하는 조세지출 추계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14] 국세청 소관세입의 상반기 진도비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표준편차
합계	55.1	51.7	49.3	49.7	48.2	47.6	49.0	51.9	57.9	52.9	53.6	51.5	3.2
소득세	51.1	50.0	47.5	46.3	47.1	43.9	45.3	52.3	53.1	46.3	48.6	48.3	3.0
법인세	52.1	49.4	47.7	52.8	47.8	54.9	52.6	50.7	63.1	58.1	52.6	52.9	4.5
상속증여세	51.3	45.6	46.1	41.6	46.0	43.9	44.1	51.7	52.6	42.8	49.8	46.9	3.9
부가가치세	50.4	48.9	50.3	49.5	46.4	44.4	47.4	49.4	55.9	48.4	54.3	49.6	3.3
개별소비세	60.1	54.3	48.9	54.5	53.3	50.7	55.1	57.6	63.0	49.3	54.2	54.6	4.3
증권거래세	63.2	54.6	62.2	49.6	57.4	37.8	59.8	40.5	52.9	47.5	50.2	52.3	8.3
인지세	50.4	44.7	52.0	47.2	49.4	48.4	48.0	51.9	51.1	46.2	43.5	48.4	2.9
과년도수입	84.8	78.5	81.0	78.5	78.2	75.4	89.0	88.8	90.3	94.1	89.1	84.3	6.3
교통세	72.1	56.9	41.8	43.5	46.7	43.4	44.5	60.9	58.0	56.2	64.6	53.5	10.1
교육세	54.3	56.3	45.4	48.0	48.7	46.4	47.0	58.0	56.4	53.9	53.3	51.6	4.6
종부세	0.0	0.0	0.0	0.0	0.0	0.0	14.9	23.2	39.5	41.0	28.2	13.4	16.9
주세	58.2	55.7	54.0	49.9	46.4	48.3	47.4	55.6	56.3	52.9	47.0	52.0	4.3
농특세	63.3	58.4	62.8	54.1	67.6	55.1	61.0	36.9	56.0	55.4	48.3	56.3	8.3

위 표는 국세청 소관세입의 상반기 진도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평균과 표준편차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교통세와 같이 거래에 대한 세금이거나 경제환경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세금, 실거래가 등에 영향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목들은 소득과세에 비해 진도비의 표준편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진도비 계산에 있어서는 특정한 한 해의 실적을 반영하기보다는 몇 개 연도의 진도비의 평균치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한 추계치 오차의 표준편차를 극소화할 수 있다.

진도비 분석방법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과모형에 비하여 객관적인 설득력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사용하기가 매우 쉽고, 무엇보다도 다른 방법에 비해 예측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도비 기법을 활용하여 조세지출을 추계하여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조세지출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한 납세자의 납세신고서이며, 국세청의 전산출력이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관련기관의 근거자료를 사용한다. 단, 비과세와 면세 등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와 사용가능한 간접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추정곤란으로 기재한다.

조세지출금액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직접감면의 경우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제,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와 같이 금액이 확정된 경우는 감면금액 자체를 사용한다. 소득공제, 영구적 손금산입 등 감면세액이 미확정된 경우는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으로 정의된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간접감면의 경우 환입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준비금 등은 적립금 누계액을 근거로 연간 이자상당 금액을 계산한 후 실효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사용한다.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 환입시기가 불확정적이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경우 이자상당 금액 없이 실효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사용한다. 지속적인 과세이연의 경우, 이자상당 금액을 반영하면 이자금액이 무한대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누적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 한계가 있어 당해 연도 실질적 감면과 동일 취급하고 있다.

당해 연도 조세지출 전망치를 계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반기 실적에 기초한 진도비를 활용하여 추계한다. 전년도 진도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진도비를 활용하고, 진도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상반기 월평균 실적을 사용하여 연간으로

환산한다. 하반기 경제환경의 변동 예산수치를 가감하여 반영하고 있다.

다.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금액 추정방법

이 장에서는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증가율 분석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비용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감면방법별로 조세지출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조세지출의 규모는 이 조세지출이 없었더라면 증가하였을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모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세목에 대해 동일하다. 세금은 소득과 소득공제의 차이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조세지출 제도가 도입된 후의 세입은 각 항목들에 대해 적절한 가정을 사용해 추계를 하게 된다. 조세지출 제도가 있을 경우의 세율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의 금액은 어느 기관에서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든 같은 자료를 사용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조세지출 추계에 필요한 과표를 구성하는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도 전망기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계 결과가 기관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표 15] 조세지출 규모 측정 흐름도

□ 조세지출이 없었을 때의 세입: A
납부세액 = (소득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조세지출이 있을 때의 세입: B
납부세액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소득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소득공제)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세율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세액공제

□ 조세지출 규모 = B − A

한편 박명호 외(2008.10)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세수손실법'으로 칭하고, 다른 두 가지 방법−세수증가법, 직접지출등가법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세수손실법은 특정 비과세·감면 조항으로 인하여 기준조세제도와 비교하여 감소되는 세수의 규모

를 사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당해 조항의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지만 '세수증가법'은 세제상 특혜가 폐지되는 경우 증대되는 세수의 규모를 사전적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세지출 규모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반면, 직접지출등가법은 특정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를 세제상의 지원이 아닌 직접지출로 대체하는 경우에 수혜자에게 동등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직접지출의 규모로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방법이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다른 두 가지 방법은 자료 상의 한계 등으로 추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세수증대법은 당해 조항의 폐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과세소득 규모를 변화시키는 효과, 경제의 전반적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쳐 세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효과 등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지출등가법의 경우 조세지출규모와 직접지출을 연계시키는 조세지출예산서가 도입된 단계에서는 구조적인 현황 파악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때문에 여기서는 세수손실법에 따라 각 감면방법별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다.

다음은 저율과세, 세액공제 및 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 간접감면으로 나누어 조세지출 규모를 구하는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결과는 세수손실법을 사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때 감면 유형에 따라 현행세율, 낮은 세율, 공제비율과 같은 다양한 세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저율과세

저율과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총소득에서 조세감면 대상을 분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저율과세의 경우, t^E는 낮은 세율을 의미하므로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대상의 규모에 세율의 차이를 곱한 값이다.

$$E = T^0 - T^E = V \times t^0 - [(V - B) \times t^0 + B \times t^E)] = B \times (t^0 - t^E)$$

(2) 세액공제 및 감면

산출세액을 도출한 다음 조세감면 대상에 대한 지출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으로부터 감면하는 것이 세액공제 또는 감면혜택이라고 상정하면 감면 대상에 공제비율을 곱한 것이 조세지출 규모이다. 아래 수식의 경우, t^E는 공제비율을 의미한다.

$$E = T^0 - T^E = V \times t^0 - (V \times t^0 - B \times t^E) = B \times t^E$$

(3) 소득공제 및 비과세

소득공제는 조세감면 대상에 대한 지출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에 공제비율 및 세율을 곱한 것이 조세지출 규모이다. 아래 수식의 경우 t^E가 공제비율을 의미한다.

$$E = T^0 - T^E = V \times t^0 - (V - B \times t^E) = B \times t^E \times t^0$$

(4) 간접감면

간접감면은 최종적인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감면보다 복잡한 수식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감가상각이 없으므로 준비금과 과세이연이 간접감면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과세이연은 준비금 제도에서 환입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므로 여기서는 준비금 제도만 고려한다.

준비금제도는 미래의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 또는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거치기간을 지나 다시 익금에 환입하는 제도로서 납세의 시기를 늦추어 줌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준비금 제도는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세부담이 축소되는 면이 있으나 손실이나 비용을 준비금과 상계하거나 준비금이 익금으로 환입되는 과세연도의 세부담은 반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준비금 제도의 순감면 효과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고려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조세지원의 감면실적 중 준비금의 감면효과는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따른 세부담의 감소만 반영하고 있으며 준비금의 익금환입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는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비금 제도에 의한 감면실적에 관한 통계는 준비금 제도의 순감면효과보다 더 큰 값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조세지원정책에 대한 경제분석의 기초가 되는 순감면 효과보다 현저히 큰 값이다.

준비금 1원을 손금산입하고 m년 거치한 다음 n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익금에 환입하는 일반적인 경우 준비금이 손금산입될 때의 한계세율을 t라 하면 준비금 1원의 손금산입에 따른 감세효과도 t원이다.

적립된 준비금이 익금으로 환입될 때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환입을 모두 고려할 때의 순감면 효과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t\,[1-\frac{1}{n}(\frac{1}{1+R})^{m+n}\cdot\frac{(1+R)^n-1}{R}]$$

여기서 t는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환입이 일어날 때의 한계세율, R=(1−t)i는 세후할인율, i는 이자율이다. 위 식에서 대괄호 안의 두 번째 항은 익금으로 환입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대괄호 전체의 표현은 순감면 효과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감면효과를 지니는 소득공제의 크기와 동일하다. 위 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m년 거치 후 처음으로 환입되는 준비금에 $(\frac{1}{1+R})^{m+n}$을 곱하여 할인하였는데 그것은 그 환입시점이 환입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말이기 때문이다. 거치기간과 환입기간을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환산하여 보면 준비금 중 제일 마지막에 환입되는 n분의 1원은 환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m+n)연간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가.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연계의 의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능별 분류란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조세지출을 세출예산의 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여 예산과 조세의 양대 지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경우 2007년 도입된 프로그램예산상의 분류기능들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주영, 2010). 2011년도 예산안의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분야 및 부문 분류체계(16개 분야·69개 부문)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은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세출예산(직접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y)으로서 조세지출에 의한 간접적인 재정지원 규모(세수감소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세출예산과의 연계 하에서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용정도와 운용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지출예산을 세출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참고자료 정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15] 미국의 경우 예산안 부속서류인 예산분석서(Analytical Perspective)에서 각 세목별 예산기능에 따라 분류한 조세지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정에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계된 재정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세지출보고서가 예산서의 부속서류 중 한 부분에 격리되어 의회 또는 행정부의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캐나다는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던 1970년대 말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하여 평가·관리하는 통합관리제도(the envelope system)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별개의 문서로 발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예산기능별로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을 비교·제시하는 등 주요 세제개편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제공된다.

15) 이하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에 관한 해외사례는 박명호 외 1인(2009)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표 16]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분야 및 부문 분류체계(2011년도 예산안)

16분야 69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84 보육·가족및여성
011 입법및선거관리	085 노인·청소년
012 국정운영	086 노동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87 보훈
014 재정·금융	088 주택
015 정부자원관리	089 사회복지일반
016 일반행정	090. 보건
020. 공공질서및안전	091 보건의료
021 법원및헌재	092 건강보험
022 법무및검찰	093 식품의약안전
023 경찰	100. 농림수산
024 해경	101 농업·농촌
025 재난관리	102 임업·산촌
030. 통일·외교	103 수산·어촌
031 통일	104 식품업
032 외교·통상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40. 국방	111 산업금융지원
041 병력운영	112 산업기술지원
042 전력유지	113 무역및투자유치
043 방위력개선	114 산업진흥·고도화
044 병무행정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50. 교육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20. 교통및물류
052 고등교육	121 도로
053 평생·직업교육	122 철도
054 교육일반	123 도시철도
060. 문화 및 관광	124 해운·항만
061 문화예술	125 항공·공항
062 관광	126 물류등기타
063 체육	130. 통신
064 문화재	131 방송통신
065 문화및관광일반	132 우정
070. 환경	140. 국토및지역개발
071 상하수도·수질	141 수자원
072 폐기물	142 지역및도시
073 대기	143 산업단지
074 자연	150. 과학기술
075 해양환경	151 기술개발
076 환경일반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80. 사회복지	153 과학기술일반
081 기초생활보장	160. 예비비
082 취약계층지원	161 예비비
083 공적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0

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그동안 조세지출보고서는 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지원분야별로 조세지출 항목들을 분류하여 분야별 감면액을 집계해 왔다.[16] 그러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까지 180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분류하여 항목별 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분류기준의 변화는 아래 표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7]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의 분류기준 변화비교(예시)

(단위: 억원)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8. 보건의료(장-90)				
1.2. 근로자 지원			8.1. 보건의료(관-91)				
조세지출 내역	08실적	09잠정	조세지출 내역		09실적	10잠정	11실적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3호 • 수혜자: 근로자 • 수혜내용: 당해연도 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한 특별공제	소득세 (5,966)	소득세 (6,707)	기타	**의료비 특별공제** • 근거규정: (좌 동) • 수 혜 자: (좌 동) • 수혜내용: (좌 동)	소득세 (6,881)	소득세 (7,350)	소득세 (8,178)

이렇게 올해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분류기준을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분류체계와 기준을 일치시켜 세출예산과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

16)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의 경우 4개의 대분류(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성장잠재력 등 경제개발 지원, 사회개발 지원, 기타)와 12개 소분류(저축지원, 근로자지원, 농어민지원, 벤처·중소기업,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개발, 공공투자, 금융산업 및 구조조정,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교육 및 문화·체육, 환경·주택, 사회보장)를 적용하였다.

하고자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7]

첫째,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재정지출의 총량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의 예산 및 세법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최소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계된 분야별 총량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가재원배분에 대한 전략 마련시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재정지출의 총량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차기연도의 조세지출내역을 세출예산안과 함께 기능별·세목별로 적시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 기능별로 세출예산안과 조세지출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재정의 운용을 정책수단별로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부처별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소관별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이 연계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1년도 조세지출내역을 프로그램예산기준에 따라 기능별·세목별·소관별로 분류한 정보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내역과 직접 비교한 예산서를 이 분석서의 별첨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다.[18]

한편 2010년 및 2011년도 세출예산(총지출 기준)과 조세지출 규모를 분야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010년 세출예산과 조세지출 규모는 각각 292.8조원과 30.1조원으로 조세지출을 통한 재정지원규모가 총 재정지출(예산지출+조세지출) 대비 9.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9] 2011년도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역시 9.2%인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을 비교하여 보면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조세지출을 통한 재정지원 규모가 상당

17) 이하는 박명호 외 1인(2009)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8) 매년 세출예산안은 예산총계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별첨자료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의 기능별·세목별·소관별 분류에서 함께 제시된 세출예산안의 금액은 총계규모를 의미한다.

19) 연간 총 조세지출 규모는 개별 조세지출항목들의 감면금액을 단순 합산한 수치로서 실제 조세지출규모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수손실법에 따라 추정된 조세지출 항목별 감면금액은 세법의 다른 조항이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하는 것으로서 세법조항 간의 상호 영향요인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추정금액도 변화하게 된다.

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조세지출을 통한 재정지원이 없거나 그 비중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분야별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의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직접지출(예산) (A)		조세지출 (B)		B/(A+B)	직접지출(예산안) (A)		조세지출 (B)		B/(A+B)
일반공공행정	487,000	16.6	19,763	6.6	3.9	532,000	17.2	16,670	5.3	3.0
공공질서 및 안전	129,000	4.4	0	0.0	0.0	136,000	4.4	0	0.0	0.0
외교 · 통일	33,000	1.1	0	0.0	0.0	37,000	1.2	0.4	0.0	0.0
국방	290,000	9.9	2,873	1.0	1.0	307,000	9.9	3,096	1.0	1.0
교육	383,000	13.1	13,334	4.4	3.4	413,000	13.3	14,377	4.6	3.4
문화 및 관광	39,000	1.3	21	0.0	0.1	41,000	1.3	24	0.0	0.1
환경	54,000	1.8	6,780	2.2	11.2	57,000	1.8	7,167	2.3	11.2
사회복지	739,000	25.2	64,515	21.4	8.0	788,000	25.5	69,284	22.1	8.1
보건	73,000	2.5	33,360	11.1	31.4	75,000	2.4	36,714	11.7	32.9
농림수산	173,000	5.9	56,386	18.7	24.6	177,000	5.7	61,244	19.5	25.7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151,000	5.2	81,836	27.2	35.1	152,000	4.9	87,910	28.0	36.6
교통 및 물류	175,000	6.0	12,239	4.1	6.5	165,000	5.3	7,420	2.4	4.3
통신	62,000	2.1	0	0.0	0.0	66,000	2.1	0	0.0	0.0
국토 및 지역개발	76,000	2.6	10,066	3.3	11.7	78,000	2.5	9,476	3.0	10.8
과학기술	43,000	1.5	223	0.1	0.5	47,000	1.5	215	0.1	0.5
예비비	21,000	0.7	0	0.0	0.0	25,000	0.8	0	0.0	0.0
합 계	2,928,000	100.0	301,396	100.0	9.3	3,096,000	100.0	313,597	100.0	9.2

주: 예산지출은 분야별 총지출 기준.
2010·2011년도 조세지출 금액은 잠정액
자료: 분야별 예산지출은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조세지출은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Ⅲ.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인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내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올해 처음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현행 국가재정법이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한 관하여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조세지출예산의 제도의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조세지출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분석하는 등 국회에서의 관련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재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지출예산서가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1.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무엇보다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정보가 국회에서의 예산심사 및 세법심사 과정에서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올 해 처음 도입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형식적'인 운용을 막고 제도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추계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추계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재정지출의 총량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의 예산 및 세법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최소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계된 분야별 총량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크다.

셋째,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금액에 대한 추계기간을 3년(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 전망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기적인 시각을 담아낼 수 없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중기적인 시각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기간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와 같이 다음 연도 조세지출에 대한 전망액으로는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항목의 개정에 따른 조세감면액 변화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여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 해(2010년) 행정부 주요 세제개편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일몰종료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동 제도들은 내년(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2년부터 가시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의 다음연도(2011년)까지 전망액으로는 올 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주요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정보를 세법 심사과정 등에 활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조세지출예산서의 추계기간을 5년 중기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당해연도 세제개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에 따른 추계효과를 Baseline 추계(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조세감면금액)와 함께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제개편에 따른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 한도의 변화 정보를 현행 세법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국세감면액 등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 세법 심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조세지출예산서가 세법 또는 예산심사과정에서 국가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면 조세지출 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항목들 중 당해연도 일몰도래 항목과 감면규모 일정금액 이상의 주요 항목 등을 중심으로 제도운용 성과 및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기타 제도개선 대안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그 밖의 제도개선 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세지출 관련 항목들의 근거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항목들은 상당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에 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법 등에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성있는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크다. 이는 조세지출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를 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집단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 규정·관리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지출 항목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정보의 수집·보고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액 중 상당수 '추정곤란' 항목들은 국세청의 감면 관련 신고서식이 없는 경우 조세지원 관련 정보수집 체계가 미흡한데에도 일정부분 기인한다. 다만 조세감면정보의 추가적인 수집은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면정보에 관한 신고서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9] 조세지출예산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논점	현황	문제점	제도개선 대안
총괄 평가	국가재정법(제27조 등)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제출	현행 예산분류체계에 따라 조세지출 항목을 재분류, 다음연도 조세지출의 추정액을 제시한 것 이 외에는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보와 거의 다르지 않음	조세감면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개된 정보가 국회의 예산과정 등에서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하는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조세지출 기준 명확화	예산서에는 조세지출의 정의 내지 포괄범위 선정에 대한 기준이 없음	'국세감면율 한도제(제88조)'하의 국세감면율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 조세감면의 항목의 포괄범위 등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때에 연간 조세감면규모(국세감면액)와 이에 기초한 국세감면율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능	- 예산서에 조세지출 범위에 대한 기준제시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의 항목의 포괄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주요국 조세지출예산서도 동일) - 정보의 투명한 공개 원칙 조세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관리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서에 포함시키되, 이를 별도의 비망항목(memorandum item)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추계기간	- 3년(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전망액 제시)	- 중기적 시각을 담고 있지 못함 - 또한 내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으로는 2010년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항목의 개정에 따른 조세감면액 변화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여주지 못함(올해 보고서에는 행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일부 간접세 항목 등의 세수변화만 반영)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간(현행 5년)과 일치시킬 필요

논점	현황	문제점	제도개선 대안
국회심사의 활용도 제고	– 행정부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정책정보로서 활용도가 미흡함 – 감면정보 제시기간이 짧고(3년, 정책변화에 따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년도 정보에 불과하여 사실상 1년), 세제개편 대상 항목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기 때문임	– 조세지출예산서가 예산 및 세법심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항목별 세수효과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	– 당해연도 세제개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에 따른 추계효과를 Baseline 추계(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조세감면금액)와 함께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세법 심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세제개편에 따른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 한도의 변화정보를 함께 제시
조세감면제도 평가체계 정비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기능 취약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일몰도래 항목 등 주요항목 중심으로 중립·객관적인 기관에서 항목별로 평가한 정보를 조세지출예산서에 첨부
법체계 정비	조세지출예산서 상 조세지출 항목들이 조특법에 대부분 규정, 그밖에 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법 등에 규정이 산재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성있는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집단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특법에서 이를 규정·관리할 필요성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정보의 수집·보고체계 개선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액 중 '추정곤란' 항목들로 인해 전체적인 국세감면규모 확인 어려움	추정곤란의 원인 중 조세지원 관련 정보수집 체계가 미흡한데에도 일정부분 기인	납세협력 비용을 감안하여 감면정보에 관한 신고서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별첨자료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의 기능별·세목별·소관별 분류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10. 일반 공공 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1000	의정활동지원	국회	93,055	정치자금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32,400	조세특례제한법 제 76조	소득세
	011.입법및선거관리	2000	국회사무처운영	국회	113,739				
	011.입법및선거관리	3000	국회도서관운영	국회	16,492				
	011.입법및선거관리	4000	예산정책처운영	국회	3,619				
	011.입법및선거관리	5000	입법조사처운영	국회	3,178				
	011.입법및선거관리	7000	국회행정지원	국회	284,178				
	011.입법및선거관리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8,439				
	011.입법및선거관리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2,046				
	012. 국정운영	15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국무총리실	412,057				
	012. 국정운영	7000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무총리실	68,666				
	012. 국정운영	8400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국무총리실	99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10. 일반 공공 행정	012. 국정운영	15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국무총리실	10,803				
	012. 국정운영	15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국무총리실	412,057				
	012. 국정운영	7000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무총리실	68,666				
	012. 국정운영	8400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국무총리실	99				
	012. 국정운영	15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국무총리실	10,803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5300	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기획재정부	124,724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100	지방행정	행정안전부	38,352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100	지방행정	행정안전부	100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200	지역발전	행정안전부	349,438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300	지방재정세제	행정안전부	30,277,226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400	지방행정연수	행정안전부	8,382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400	지방행정연수	행정안전부	48,005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500	이북5도	행정안전부	2,226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10. 일반 공공 행정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200	지역발전	행정안전부	210,169				
	014. 재정 · 금융	1000	공공자금관리	기획재정부	20,778,006				
	014. 재정 · 금융	1100	조세정책	기획재정부	2,316				
	014. 재정 · 금융	1200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809				
	014. 재정 · 금융	1300	국고관리	기획재정부	65,370				
	014. 재정 · 금융	1600	정부위원회	기획재정부	6,916				
	014. 재정 · 금융	1700	국제금융	기획재정부	173,599				
	014. 재정 · 금융	1700	국제금융	기획재정부	3,960,400				
	014. 재정 · 금융	1800	경제협력	기획재정부	123,782				
	014. 재정 · 금융	1900	정책조정	기획재정부	360				
	014. 재정 · 금융	2000	재정정책	기획재정부	5,712				
	014. 재정 · 금융	2300	재정운용	기획재정부	21,354				
	014. 재정 · 금융	2400	공공정책	기획재정부	4,687				
	014. 재정 · 금융	3500	기금운영비	기획재정부	118				
	014. 재정 · 금융	3500	기금운영비	기획재정부	11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10. 일반 공공 행정	014. 재정 · 금융	3500	기금운영비	금융위원회	15				
	014. 재정 · 금융	3500	기금운영비	기획재정부	1,179				
	014. 재정 · 금융	3500	기금운영비	금융위원회	309,889				
	014. 재정 · 금융	3500	기금운영비	금융위원회	16,988				
	014. 재정 · 금융	7100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부	107,315				
	014. 재정 · 금융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기획재정부	1,783,974				
	014. 재정 · 금융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기획재정부	44				
	014. 재정 · 금융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기획재정부	7,778,435				
	014. 재정 · 금융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기획재정부	22,285,984				
	014. 재정 · 금융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기획재정부	16,849,095				
	014. 재정 · 금융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기획재정부	1,215,000				
	014. 재정 · 금융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기획재정부	16,332				
	014. 재정 · 금융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기획재정부	3,364				
	014. 재정 · 금융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기획재정부	161,992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10. 일반 공공 행정	014. 재정 · 금융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기획재정부	6,483,353				
	014. 재정 · 금융	9500	계정간거래(예수원금상환)	기획재정부	2,127,500				
	014. 재정 · 금융	9600	계정간거래(예수이자상환)	기획재정부	534,702				
	014. 재정 · 금융	9700	여유자금운용	기획재정부	796,490				
	014. 재정 · 금융	9700	여유자금운용	기획재정부	26,229,064				
	014. 재정 · 금융	9700	여유자금운용	기획재정부	93,999				
	014. 재정 · 금융	9700	여유자금운용	기획재정부	638,113				
	014. 재정 · 금융	9700	여유자금운용	금융위원회	1,941,571				
	014. 재정 · 금융	9700	여유자금운용	금융위원회	2,215,886				
	014. 재정 · 금융	9700	여유자금운용	금융위원회	367,253				
	014. 재정 · 금융	9800	차입금원금상환	기획재정부	48,630,769				
	014. 재정 · 금융	5200	복권기금운영(일반)	기획재정부	1,506,511				
	014. 재정 · 금융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기획재정부	859,438				
	014. 재정 · 금융	1100	금융정책지원	금융위원회	3,200				
	014. 재정 · 금융	1100	금융정책지원	금융위원회	189,400				
	014. 재정 · 금융	1100	금융정책지원	금융위원회	89,982				
	014. 재정 · 금융	1200	금융서비스	금융위원회	68,460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2	
	014. 재정 · 금융	1300	금융정보분석	금융위원회	6,34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10. 일반 공공 행정	014. 재정 · 금융	7100	금융행정지원	금융위원회	25,524				
	014. 재정 · 금융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금융위원회	1,849,357				
	014. 재정 · 금융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금융위원회	2,754				
	014. 재정 · 금융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금융위원회	424				
	014. 재정 · 금융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금융위원회	550,000				
	014. 재정 · 금융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금융위원회	2,468,470				
	014. 재정 · 금융	1100	금융정책지원	금융위원회	1,409,765				
	014. 재정 · 금융	9800	차입금원금상환	금융위원회	3,846,788				
	014. 재정 · 금융	2100	구조조정지원	금융위원회	5,000,000				
	014. 재정 · 금융	3500	기금운영비	금융위원회	18,401				
	014. 재정 · 금융	1000	국세부과징수	국세청	167,368				
	014. 재정 · 금융	2000	납세지원 · 관리	국세청	3,983				
	014. 재정 · 금융	7000	국세행정지원	국세청	1,249,576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5,1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소득세, 법인세
	014. 재정 · 금융	7000	국세행정지원	국세청	55,91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45,7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소득세, 법인세
	014. 재정 · 금융	1100	수출입통관	관세청	14,08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10. 일반 공공 행정	014. 재정 · 금융	1200	관세심사	관세청	4,560				
	014. 재정 · 금융	1300	밀수감시단속	관세청	38,744				
	014. 재정 · 금융	1400	정보화및국제협력	관세청	46,920				
	014. 재정 · 금융	7100	관세행정지원	관세청	315,635				
	014. 재정 · 금융	3100	지역균형발전	관세청	2,950				
	014. 재정 · 금융		기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17,300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법인세
	014. 재정 · 금융		기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014. 재정 · 금융		기타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48조	
	014. 재정 · 금융		기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014. 재정 · 금융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565,900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	소득세
	015. 정부자원관리	1600	인사관리	행정안전부	76,996				
	015. 정부자원관리	1700	중앙공무원교육	행정안전부	6,615				
	015. 정부자원관리	1800	조직관리	행정안전부	9,414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10. 일반 공공 행정	015. 정부자원관리	1900	국가사회정보화	행정안전부	572,406				
	015. 정부자원관리	1700	중앙공무원교육	행정안전부	55,293				
	016. 일반행정	1000	대통령실 운영	대통령실	91,054				
	016. 일반행정	1100	대통령실 국정지원	대통령실	33,289				
	016. 일반행정	1200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	대통령실	41,682				
	016. 일반행정	1100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감사원	100,957				
	016. 일반행정	1100	국가정보지원	국가정보원	496,399				
	016. 일반행정	2000	정부의전	행정안전부	7,335				
	016. 일반행정	2100	청사관리	행정안전부	108,270				
	016. 일반행정	2200	기록물관리	행정안전부	39,920				
	016. 일반행정	2300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행정안전부	125,828				
	016. 일반행정	7000	행정안전행정지원	행정안전부	225,327				
	016. 일반행정	7000	특임장관실 행정지원	특임장관실	10,159				
	016. 일반행정	1000	정부입법역량강화	법제처	5,12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10.일반 공공 행정	016. 일반행정	7000	법제행정지원	법제처	19,532				
	016. 일반행정	1000	인권보호 및 향상	국가인권 위원회	22,388				
	016. 일반행정	1100	공정거래 행정지원	공정거래 위원회	46,275				
	016. 일반행정	1200	경쟁촉진 및 소비자후생 증진	공정거래 위원회	32,590				
	016. 일반행정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공정거래 위원회	42				
	016. 일반행정	1100	국민권익증진	국민권익 위원회	61,631				
	016. 일반행정	7100	조달행정지원	조달청	13,796				
	016. 일반행정	1200	조달사업 운영	조달청	27,979				
	016. 일반행정	7100	조달행정지원	조달청	85,165				
	016. 일반행정	8000	회계간거래	조달청	0				
	016. 일반행정	8200	계정간거래	조달청	128,381				
	016. 일반행정	8400	회계기금간 거래	조달청	7,096				
	016. 일반행정	9700	여유자금운용	조달청	146,583				
	016. 일반행정	1000	국가통계생산관리	통계청	122,48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16. 일반행정	2000	책임운영기관운영	통계청	108,719				
	016. 일반행정	7000	통계행정지원	통계청	49,702				
	021. 법원및헌재	1100	재판활동종합지원	대법원	1,065,040				
	021. 법원및헌재	1200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대법원	118,747				
	021. 법원및헌재	1300	법원도서관	대법원	3,192				
	021. 법원및헌재	1100	재판활동종합지원	대법원	185,710				
	021. 법원및헌재	1200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대법원	25,993				
	021. 법원및헌재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대법원	20,000				
	021. 법원및헌재	8400	내부거래지출	대법원	8,367				
	021. 법원및헌재	1000	헌법재판소운영	헌법재판소	31,521				
	022. 법무및검찰	1000	법무활동	법무부	18,078				
	022. 법무및검찰	1100	인권활동	법무부	31,160				
	022. 법무및검찰	1200	출입국관리	법무부	48,752				
	022. 법무및검찰	1300	검찰활동	법무부	167,859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2. 법무및검찰	1500	교정활동	법무부	204,171				
	022. 법무및검찰	1600	범죄예방활동	법무부	43,024				
	022. 법무및검찰	1700	법무시설조성	법무부	140,107				
	022. 법무및검찰	5100	법무교육훈련	법무부	3,064				
	022. 법무및검찰	7000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부	1,742,662				
	022. 법무및검찰	8600	기금전출금(예수원금상환)	법무부	159				
	022. 법무및검찰	8700	기금전출금(예수이자상환)	법무부	24				
	022. 법무및검찰	88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	법무부	61,779				
	022. 법무및검찰	1500	교정활동	법무부	39,305				
	022. 법무및검찰	7000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부	3,681				
	022. 법무및검찰	1700	법무시설조성	법무부	80,378				
	022. 법무및검찰	1100	인권활동	법무부	50,998				
	022. 법무및검찰	7100	기금운영비	법무부	55				
	022. 법무및검찰	9700	여유자금운용	법무부	11,32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2400	과학수사	행정안전부	44,990				
	023. 경찰	2400	과학수사	행정안전부	11,434				
	023. 경찰	1100	민생치안확립	경찰청	403,660				
	023. 경찰	1200	사회질서유지	경찰청	235,108				
	023. 경찰	1300	국가안보확보	경찰청	50,884				
	023. 경찰	1400	전문경찰양성	경찰청	44,446				
	023. 경찰	1500	치안인프라구축	경찰청	349,321				
	023. 경찰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경찰청	35,918				
	023. 경찰	7100	경찰행정지원	경찰청	81,291				
	023. 경찰	1100	민생치안확립	경찰청	27,030				
	023. 경찰	7100	경찰행정지원	경찰청	2,621				
	023. 경찰	7100	경찰행정지원	경찰청	6,493,583				
	023. 경찰	2100	운전면허관리	경찰청	0				
	023. 경찰	8800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경찰청	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3100	경찰병원운영	경찰청	61,820				
	023. 경찰	8800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경찰청	3,022				
	023. 경찰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경찰청	2				
	023. 경찰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경찰청	0				
	023. 경찰	1000	장비관리	해양경찰청	343,575				
	024. 해경	1100	해상경비및안전활동	해양경찰청	30,725				
	024. 해경	1200	해상치안확립	해양경찰청	3,744				
	024. 해경	1300	정비창운영	해양경찰청	23,266				
	024. 해경	7000	해양경찰 행정지원	해양경찰청	575,113				
	024. 해경	7000	해양경찰 행정지원	해양경찰청	57,660				
	025. 재난관리	6100	복권기금운영 (재해재난긴급구호)	기획재정부	500				
	025. 재난관리	2500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9,454				
	025. 재난관리	2500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36,650				
	025. 재난관리	1000	예방안전관리	소방방재청	7,261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5. 재난관리	2000	소방정책관리	소방방재청	21,675				
	025. 재난관리	2000	소방정책관리	소방방재청	390				
	025. 재난관리	2000	소방정책관리	소방방재청	8,810				
	025. 재난관리	3000	방재관리	소방방재청	378,164				
	025. 재난관리	3000	방재관리	소방방재청	207,169				
	025. 재난관리	3000	방재관리	소방방재청	8,415				
	025. 재난관리	4000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	소방방재청	23,832				
	025. 재난관리	5000	재난안전교육관리	소방방재청	4,485				
	025. 재난관리	6000	재난상황관리	소방방재청	17,245				
	025. 재난관리	7000	소방방재행정지원	소방방재청	50,394				
외교·통일	031. 통일	1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1,377				
	031. 통일	1000	통일정책	통일부	7,662				
	031. 통일	1100	북한정세분석관리	통일부	11,715				
	031. 통일	2100	인도적 문제해결	통일부	7,036				
	031. 통일	23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부	118,451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외교·통일	031. 통일	3000	남북경제협력	통일부	3,146				
	031. 통일	3200	개성공단 지원	통일부	1,071				
	031. 통일	4000	남북회담	통일부	1,735				
	031. 통일	5000	통일교육	통일부	11,219				
	031. 통일	7000	통일행정지원	통일부	44,812				
	031. 통일	8400	회계기금간거래	통일부	350,000				
	031. 통일	2000	남북사회문화교류	통일부	8,800				
	031. 통일	2100	인도적 문제해결	통일부	613,890				
	031. 통일	3000	남북경제협력	통일부	302,647				
	031. 통일	3200	개성공단 지원	통일부	92,968				
	031. 통일	7100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통일부	5,701				
	031. 통일	9100	기금간거래	통일부	127,161				
	031. 통일	9700	여유자금운용	통일부	225,670				
	032. 외교 · 통상	2200	대외경제협력 지원	기획재정부	617,880				
	032. 외교 · 통상	3600	기금운영비	기획재정부	5,91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외교·통일	032. 외교 · 통상	1100	정상외교	교육과학기술부	11,684				
	032. 외교 · 통상	1200	다자관계 협력	교육과학기술부	17,025				
	032. 외교 · 통상	1300	국제기구분담금	교육과학기술부	417,465				
	032. 외교 · 통상	1400	지역외교	교육과학기술부	13,645				
	032. 외교 · 통상	15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교육과학기술부	2,854				
	032. 외교 · 통상	15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교육과학기술부	42,549				
	032. 외교 · 통상	1600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9,232				
	032. 외교 · 통상	1600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4,522				
	032. 외교 · 통상	1700	여권업무 선진화	교육과학기술부	84,405				
	032. 외교 · 통상	1800	경제통상외교	교육과학기술부	22,955				
	032. 외교 · 통상	1900	국제개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교육과학기술부	497,587				
	032. 외교 · 통상	2000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7,865				
	032. 외교 · 통상	2100	재외공관운영	교육과학기술부	450,106				
	032. 외교 · 통상	7000	외교통상 행정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51,592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40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개별소비세
	032. 외교 · 통상	7000	외교통상 행정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0,486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외교·통일	032. 외교 · 통상	9800	차입금원금 상환	교육과학기술부	35,400				
	032. 외교 · 통상	9700	여유자금운용	교육과학기술부	7,841				
040. 국방	041. 병력운영	1100	급여정책	국방부	9,039,112				
	041. 병력운영	1200	급식및피복	국방부	1,646,464				
	041. 병력운영	81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국방부	2,133,494				
	042. 전력유지	2100	국방정보화	국방부	472,156				
	042. 전력유지	2200	장병보건및복지향상	국방부	221,184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33,3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주세, 교육세
	042. 전력유지	2200	장병보건및복지향상	국방부	291,147				
	042. 전력유지	2300	군수지원및협력	국방부	3,718,969				
	042. 전력유지	2400	군인사및교육훈련	국방부	450,030				
	042. 전력유지	2500	군사시설건설및운영	국방부	2,256,130				
	042. 전력유지	2500	군사시설건설및운영	국방부	75,710				
	042. 전력유지	2600	예비전력관리	국방부	135,466				
	042. 전력유지	2700	장병보건및복지향상(융자)	국방부	172,539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40. 국방	042. 전력유지	3100	국방홍보원운영	국방부	27,457				
	042. 전력유지	3200	국군인쇄창운영	국방부	20,337				
	042. 전력유지	3300	육군2보급창운영	국방부	570				
	042. 전력유지	3400	해군보급창운영	국방부	1,569				
	042. 전력유지	3500	공군40보급창운영	국방부	530				
	042. 전력유지	3600	국군수도병원운영	국방부	19,102				
	042. 전력유지	5100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부	785,046				
	042. 전력유지	7100	국방행정지원	국방부	667,152				
	042. 전력유지	8000	회계간 거래(전출금)	국방부	0				
	042. 전력유지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국방부	23,400				
	042. 전력유지	4100	군사시설이전사업	국방부	346,304				
	042. 전력유지	4100	군사시설이전사업	국방부	543,327				
	042. 전력유지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국방부	22,796				
	042. 전력유지	8500	회계기금간거래 (공적자금 예탁)	국방부	278,793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40. 국방	042. 전력유지	9700	여유자금운용	국방부	305,891				
	043. 방위력개선	1000	지휘통제통신사업	방위사업청	62,499				
	043. 방위력개선	1100	기동전력사업	방위사업청	1,141,517				
	043. 방위력개선	1200	함정사업	방위사업청	1,777,706				
	043. 방위력개선	1300	항공기사업	방위사업청	1,556,426				
	043. 방위력개선	1400	화력탄약사업	방위사업청	1,329,368				
	043. 방위력개선	1500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방위사업청	717,801				
	043. 방위력개선	1600	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	방위사업청	904,059				
	043. 방위력개선	1700	국방연구개발사업	방위사업청	2,019,160				
	043. 방위력개선	1800	국방품질경영사업	방위사업청	40,923				
	043. 방위력개선	7000	방위사업 종합지원	방위사업청	107,061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276,300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
	043. 방위력개선	8800	내부거래지출	방위사업청	4,829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40. 국방	044. 병무행정	1100	병역자원관리	병무청	10,585				
	044. 병무행정	1400	보충역복무지원	병무청	11,156				
	044. 병무행정	7100	병무행정지원	병무청	155,116				
	044. 병무행정	7100	병무행정지원	병무청	5,177				
050. 교육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000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과학기술부	41,545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000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과학기술부	45,575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100	초중등교육 ICT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42,473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200	특수교육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52,512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300	학교교육 재정지원	교육과학기술부	35,323,329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교육과학기술부	346,454				
	052. 고등교육	5700	대학(원)교육역량강화	기획재정부	4,500				
	052. 고등교육	2000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	교육과학기술부	3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100	대학구조 체제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32,485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교육과학기술부	788,363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교육과학기술부	431,360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교육과학기술부	58,752				
	052. 고등교육	2300	고등교육 ICT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6,772				
	052. 고등교육	2400	학술연구 역량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296,054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53,200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소득세
	052. 고등교육	2500	한국사 연구 진흥	교육과학기술부	24,198				
	052. 고등교육	260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교육과학기술부	837,593				
	052. 고등교육	2700	국립대학 운영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350,405				
	052. 고등교육	2800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융자)	교육과학기술부	220,110				
	052. 고등교육	2900	기금운영비	교육과학기술부	3,678				
	052. 고등교육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교육과학기술부	306,431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50. 교육	052. 고등교육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교육과학기술부	15,349				
	052. 고등교육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교육과학기술부	1,445				
	052. 고등교육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교육과학기술부	36,428				
	052. 고등교육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교육과학기술부	33,248				
	052. 고등교육	9700	여유자금운용	교육과학기술부	51,020				
	053. 평생 · 직업교육	4000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교육과학기술부	8,193				
	053. 평생 · 직업교육	4100	평생학습 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13,663				
	053. 평생 · 직업교육	4200	직업교육 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195,026				
	053. 평생 · 직업교육	4300	국제교육 협력 증진	교육과학기술부	69,265				
	053. 평생 · 직업교육	4500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62,633				
	053. 평생 · 직업교육	4000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교육과학기술부	3,000				
	053. 평생 · 직업교육	4200	직업교육 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292,3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54. 교육일반	7000	교육과학기술행정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25,530	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2,3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소득세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5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부가가치세
						교육비 특별공제	1,378,700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소득세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1100	종교문화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862				
	061. 문화예술	1200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186,421				
	061. 문화예술	1200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17,085				
	061. 문화예술	1200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84,305				
	061. 문화예술	1300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37,253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7,565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	1,0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10호	관세
	061. 문화예술	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2,440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061. 문화예술	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6,270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문화체육관광부	140,554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문화체육관광부	99,255				
	061. 문화예술	1600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체육관광부	98,520				
	061. 문화예술	1600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체육관광부	104,167				
	061. 문화예술	17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29,674				
	061. 문화예술	1800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9,362				
	061. 문화예술	1900	국정홍보기획	문화체육관광부	18,321				
	061. 문화예술	210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문화체육관광부	8,458				
	061. 문화예술	2600	예술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199				
	061. 문화예술	27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문화체육관광부	18,614				
	061. 문화예술	2800	국립박물관운영	문화체육관광부	59,65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2900	국립국어원운영	문화체육관광부	10,018				
	061. 문화예술	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문화체육관광부	35,290				
	061. 문화예술	3100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40,893				
	061. 문화예술	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문화체육관광부	22,830				
	061. 문화예술	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문화체육관광부	87,213				
	061. 문화예술	3400	국립국악원운영	문화체육관광부	40,883				
	061. 문화예술	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문화체육관광부	14,762				
	061. 문화예술	3600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17,980				
	061. 문화예술	3700	국립국악중고운영	문화체육관광부	1,876				
	061. 문화예술	3800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3,543				
	061. 문화예술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문화체육관광부	45,087				
	061. 문화예술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문화체육관광부	49,000				
	061. 문화예술	8800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	1,619				
	061. 문화예술	2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체육관광부	69,67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8900	기금간거래	문화체육관광부	20,117				
	061. 문화예술	8900	기금간거래	문화체육관광부	20,000				
	061. 문화예술	1100	방송통신융합촉진	방송통신위원회	64,523				
	061. 문화예술	1200	방송통신융합촉진(투/융자)	방송통신위원회	0				
	061. 문화예술	1400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방송통신위원회	3,350				
	061. 문화예술	1600	방송진흥기반구축	방송통신위원회	47,414				
	061. 문화예술	1700	방송진흥기반구축(융자)	방송통신위원회	22,000				
	061. 문화예술	2100	방송인프라개선	방송통신위원회	60,229				
	061. 문화예술	4200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방송통신위원회	20,896				
	061. 문화예술	5200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방송통신위원회	3,100				
	061. 문화예술	7200	방송발전기금운영비	방송통신위원회	3,181				
	061. 문화예술	9000	내부거래지출	방송통신위원회	50,000				
	061. 문화예술	9700	여유자금운용	방송통신위원회	49,666				
	062. 관광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문화체육관광부	875				
	062. 관광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문화체육관광부	370,504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60. 문화 및 관광	062. 관광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문화체육관광부	62,704				
	062. 관광	4200	관광산업육성	문화체육관광부	76,234				
	062. 관광	4300	외래관광객유치	문화체육관광부	1,753				
	062. 관광	4300	외래관광객유치	문화체육관광부	185,164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400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개별소비세, 교육세
	062. 관광	4400	관광산업 기금융자	문화체육관광부	213,129				
	062. 관광	4500	관광레저도시육성	문화체육관광부	6,270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	
	062. 관광	46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4,033				
	062. 관광	9000	기금간거래	문화체육관광부	60,000				
	063. 체육	5100	생활체육육성	문화체육관광부	894				
	063. 체육	5100	생활체육육성	문화체육관광부	97,153				
	063. 체육	5100	생활체육육성	문화체육관광부	191,586				
	063. 체육	5200	전문체육육성	문화체육관광부	42,128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추정곤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제1호, 제2호	
	063. 체육	5200	전문체육육성	문화체육관광부	148,667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63. 체육	53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문화체육관광부	258,67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2호, 제116조 제1항 제22호, 제118조 제1항 제13호	
	063. 체육	53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문화체육관광부	10,57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0호, 제116조 제1항 제20호, 제118조 제1항 제12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3호, 제116조 제1항 제23호, 제118조 제1항 제14호	
	063. 체육	5500	장애인체육육성	문화체육관광부	24,667				
	063. 체육	5500	장애인체육육성	문화체육관광부	5,401				
	063. 체육	9000	기금간거래	문화체육관광부	80,0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60. 문화 및 관광	064. 문화재	1100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청	12,664				
	064. 문화재	1200	무형문화재보호	문화재청	20,711				
	064. 문화재	1300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청	201,847				
	064. 문화재	1300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청	20,160				
	064. 문화재	1400	문화재활용기반구축	문화재청	25,864				
	064. 문화재	1500	궁능원보존관리	문화재청	47,698				
	064. 문화재	3100	문화재연구소운영(R&D)	문화재청	11,847				
	064. 문화재	3200	전통문화전문인력양성	문화재청	11,149				
	064. 문화재	7100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청	50,830				
	064. 문화재	81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문화재청	37,148				
	064. 문화재	6100	문화재보존관리 효율화	문화재청	96,104				
	064. 문화재	9700	여유자금운영	문화재청	27,651				
	065. 문화및관광일반	7100	문화 · 관광행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0,254				
	065. 문화및관광일반	7200	기금운영비	문화체육관광부	572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65. 문화및관광일반	9700	여유자금운용	문화체육관광부	45,180				
	065. 문화및관광일반	7200	기금운영비	문화체육관광부	21,751				
	065. 문화및관광일반	7200	기금운영비	문화체육관광부	11,178				
	065. 문화및관광일반	7200	기금운영비	문화체육관광부	939				
	065. 문화및관광일반	7200	기금운영비	문화체육관광부	607				
	065. 문화및관광일반	7200	기금운영비	문화체육관광부	9,283				
	065. 문화및관광일반	9700	여유자금운용	문화체육관광부	129,090				
	065. 문화및관광일반	9700	여유자금운용	문화체육관광부	117,181				
	065. 문화및관광일반	9700	여유자금운용	문화체육관광부	18,103				
	065. 문화및관광일반	9700	여유자금운용	문화체육관광부	27,699				
	065. 문화및관광일반	9700	여유자금운용	문화체육관광부	194,766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 · 수질	1100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환경부	80,637				
	071. 상하수도 · 수질	1100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환경부	2,044,501				
	071. 상하수도 · 수질	1100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환경부	406,958				
	071. 상하수도 · 수질	1200	수질보전 및 관리	환경부	530,037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70. 환경 보호	071. 상하수도 · 수질	1300	4대강유역관리	환경부	411,041				
	071. 상하수도 · 수질	1300	4대강유역관리	환경부	193,540				
	071. 상하수도 · 수질	1300	4대강유역관리	환경부	89,848				
	071. 상하수도 · 수질	1300	4대강유역관리	환경부	67,459				
	071. 상하수도 · 수질	9700	여유자금운용	환경부	5,113				
	071. 상하수도 · 수질	9700	여유자금운용	환경부	9,826				
	071. 상하수도 · 수질	9700	여유자금운용	환경부	3,945				
	071. 상하수도 · 수질	9700	여유자금운용	환경부	4,693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체계 구축	환경부	84,33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588,2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부가가치세
	072. 폐기물	1500	폐기물처리 및 관리	환경부	8,392				
	072. 폐기물	1500	폐기물처리 및 관리	환경부	169,452				
	072. 폐기물	1500	폐기물처리 및 관리	환경부	1,500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환경부	7,959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부가가치세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환경부	294,165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70. 환경 보호	074. 자연	1800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환경부	323,515				
	074. 자연	1800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환경부	75,583				
	075. 해양환경	1000	해양환경보전	농림수산식품부	15,900				
	075. 해양환경	1000	해양환경보전	국토해양부	105,419				
	075. 해양환경	1000	해양환경보전	국토해양부	57,221				
	075. 해양환경	1000	해양환경보전	국토해양부	5,410				
	075. 해양환경	1400	해양오염관리	해양경찰청	13,575				
	076. 환경일반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환경부	2,776,208				
	076. 환경일반	1900	환경보전기반육성	환경부	390,367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9,600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법인세
	076. 환경일반	1900	환경보전기반육성	환경부	6,669				
	076. 환경일반	1900	환경보전기반육성	환경부	11,750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18,900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관세
	076. 환경일반	7100	환경행정 지원	환경부	275,230				
	076. 환경일반	7100	환경행정 지원	환경부	113				
	076. 환경일반	7100	환경행정 지원	환경부	1,625				
	076. 환경일반	7100	환경행정 지원	환경부	7,003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70. 환경 보호	076. 환경일반	7100	환경행정 지원	환경부	3,158				
	076. 환경일반	7100	환경행정 지원	환경부	1,593				
	076. 환경일반	7100	환경행정 지원	환경부	1,133				
	076. 환경일반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환경부	83,414				
	076. 환경일반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환경부	7,000				
	076. 환경일반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환경부	3,305				
	076. 환경일반	88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환경부	15,753				
	076. 환경일반	9700	여유자금운용	환경부	525				
080. 사회 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1100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7,516,784				
	082. 취약계층지원	2600	일자리지원	행정안전부	124,400				
	082. 취약계층지원	1300	요보호아동보호육성	보건복지부	38,339				
	082. 취약계층지원	1400	아동복지지원	보건복지부	130,815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보건복지부	787,259	장애인 추가공제	340,400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보건복지부	1,9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600	장애인재활지원	보건복지부	17,164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59,8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082. 취약계층지원	1600	장애인재활지원	보건복지부	5,200				
	082. 취약계층지원	1800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30,114				
	082. 취약계층지원	1900	부랑인의사상자지원	보건복지부	28,940				
	082. 취약계층지원	8000	회계간거래	보건복지부	8,933				
	082. 취약계층지원	8800	회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1,399				
	082. 취약계층지원	9300	계정간거래	보건복지부	2				
	083. 공적연금	6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	교육과학기술부	22,413				
	083. 공적연금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교육과학기술부	1,790,822				
	083. 공적연금	62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운용(기금융자)	교육과학기술부	1,584,392				
	083. 공적연금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교육과학기술부	74,785				
	083. 공적연금	9700	여유자금운용	교육과학기술부	5,728,339				
	083. 공적연금	4300	군인연금(연금정책)	국방부	2,351,628				
	083. 공적연금	7000	군인연금기금 (기금운영비)	국방부	64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국방부	20,000				
	083. 공적연금	9700	여유자금운용	국방부	185,633				
	083. 공적연금	8800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행정안전부	1,666,236				
	083. 공적연금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행정안전부	9,203,644				
	083. 공적연금	3100	대부사업운영	행정안전부	1,237,177				
	083. 공적연금	3200	주택및시설운영	행정안전부	911,596				
	083. 공적연금	3400	차입금이자상환	행정안전부	9,871				
	083. 공적연금	3500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행정안전부	85,695				
	083. 공적연금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행정안전부	50,000				
	083. 공적연금	9700	여유자금운용	행정안전부	2,678,253				
	083. 공적연금	9800	차입금원금상환	행정안전부	223				
	083. 공적연금	2000	국민연금운영	보건복지부	387				
	083. 공적연금	8400	회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10,722				
	083. 공적연금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398,371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165,507				
	083. 공적연금	7600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보건복지부	10,359,810				
	083. 공적연금	9700	여유자금운용	보건복지부	65,834,060				
	084. 보육 · 가족및여성	4600	가족기능강화	기획재정부	4,000	부녀자 추가공제	207,000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소득세
	084. 보육 · 가족및여성	2100	가족기능강화	여성가족부	120,942				
	084. 보육 · 가족및여성	2100	가족기능강화	여성가족부	64,850				
	084. 보육 · 가족및여성	4700	민간보육시설지원	기획재정부	30,000				
	084. 보육 · 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보건복지부	2,475,380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347,500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소득세
	084. 보육 · 가족및여성	8600	회계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221				
	084. 보육 · 가족및여성	2500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보건복지부	48,651	출생·입양에 대한 추가공제	77,300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5호	소득세
	084. 보육 · 가족및여성	2500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보건복지부	32,056	다자녀 추가공제	234,700	소득세법 제51조의2	소득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4. 보육 · 가족및여성	1100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여성가족부	21,456				
	084. 보육 · 가족및여성	1200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여성가족부	24,167				
	084. 보육 · 가족및여성	1200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여성가족부	2,460				
	084. 보육 · 가족및여성	4100	여성 ·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여성가족부	16,225				
	084. 보육 · 가족및여성	4100	여성 ·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여성가족부	3,626				
	084. 보육 · 가족및여성	4100	여성 ·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여성가족부	4,156				
	084. 보육 · 가족및여성	1100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여성가족부	1,599				
	084. 보육 · 가족및여성	7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여성가족부	53				
	084. 보육 · 가족및여성	7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여성가족부	21,644				
	084. 보육 · 가족및여성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여성가족부	413				
	084. 보육 · 가족및여성	9700	여유자금운용	여성가족부	2,249				
	085. 노인 · 청소년	1000	아동·청소년정책	보건복지부	759				
	085. 노인 · 청소년	2100	노인생활안정	보건복지부	3,103,54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394,500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
	085. 노인 · 청소년	2200	노인의료보장	보건복지부	511,76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5. 노인 · 청소년	2200	노인의료보장	보건복지부	16,077				
	085. 노인 · 청소년	2400	장사시설확충	보건복지부	65,300				
	085. 노인 · 청소년	2300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1,944				
	085. 노인 · 청소년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여성가족부	17,826				
	085. 노인 · 청소년	2200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여성가족부	3,845				
	085. 노인 · 청소년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여성가족부	49,417				
	085. 노인 · 청소년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여성가족부	41,256				
	085. 노인 · 청소년	2200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여성가족부	29,595				
	085. 노인 · 청소년	7000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영비	여성가족부	50				
	085. 노인 · 청소년	8900	기금간거래	여성가족부	306				
	085. 노인 · 청소년	9700	여유자금 운용	여성가족부	25,851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고용노동부	568,889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80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소득세, 법인세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고용노동부	4,149,525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법인세
	086. 노동	1100	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1,253,556				
	086. 노동	1100	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296,325				
	086. 노동	1100	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907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300	고용평등실현	고용노동부	13,056				
	086. 노동	1300	고용평등실현	고용노동부	544,323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고용노동부	1,339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고용노동부	176,931				
	086. 노동	2000	노사정책	고용노동부	24,025				
	086. 노동	300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고용노동부	18,450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4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소득세
	086. 노동	300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고용노동부	74,74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000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법인세
						생산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49,800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소득세
	086. 노동	300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고용노동부	283,73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124,500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365,200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소득세
	086. 노동	5000	국제노동협력	고용노동부	11,738				
	086. 노동	7100	지방노동행정	고용노동부	1,712				
	086. 노동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고용노동부	45,8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6. 노동	4000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4,141,246				
	086. 노동	4100	산업재해예방	고용노동부	54,272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900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법인세
	086. 노동	4100	산업재해예방	고용노동부	284,845				
	086. 노동	7000	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부	3,478				
	086. 노동	7000	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부	6,892				
	086. 노동	7000	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부	323,326				
	086. 노동	7000	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부	271,884				
	086. 노동	7000	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부	43,154				
	086. 노동	7000	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부	9,892				
	086. 노동	7000	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부	100,113				
	086. 노동	7000	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부	7,856				
	086. 노동	7200	노동행정지원(차입금이자)	고용노동부	881				
	086. 노동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고용노동부	200,000				
	086. 노동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고용노동부	4,701				
	086. 노동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고용노동부	250,0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6. 노동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고용노동부	20,000				
	086. 노동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고용노동부	16,000				
	086. 노동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고용노동부	51,000				
	086. 노동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고용노동부	4,515				
	086. 노동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고용노동부	9,517				
	086. 노동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고용노동부	12,313				
	086. 노동	9700	여유자금운용	고용노동부	92,210				
	086. 노동	9700	여유자금운용	고용노동부	4,883,955				
	086. 노동	9700	여유자금운용	고용노동부	247,883				
	086. 노동	9700	여유자금운용	고용노동부	1,041,722				
	086. 노동	9700	여유자금운용	고용노동부	285,113				
	086. 노동	9800	차입금원금상환	고용노동부	24,44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6. 노동		기타	고용노동부		고용증대세액공제	25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소득세, 법인세
	086. 노동		기타	고용노동부		근로장려금 지급	464,5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0	소득세
	087. 보훈	1100	보훈보상	국가보훈처	2,800,225				
	087. 보훈	1200	보훈관리	국가보훈처	21,141				
	087. 보훈	1300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53,510				
	087. 보훈	1300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5,691				
	087. 보훈	1400	국립묘지	국가보훈처	31,195				
	087. 보훈	1500	보훈복지	국가보훈처	571,545				
	087. 보훈	1500	보훈복지	국가보훈처	34,180				
	087. 보훈	1500	보훈복지	국가보훈처	103,289				
	087. 보훈	1600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22,726				
	087. 보훈	1600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18,284				
	087. 보훈	7100	보훈행정	국가보훈처	89,319				
	087. 보훈	7100	보훈행정	국가보훈처	1,286				
	087. 보훈	7100	보훈행정	국가보훈처	183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7. 보훈	7100	보훈행정	국가보훈처	1,330				
	087. 보훈	8400	회계기금간거래	국가보훈처	6,032				
	087. 보훈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국가보훈처	5				
	087. 보훈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국가보훈처	70,391				
	087. 보훈	9700	여유자금운용	국가보훈처	44,881				
	087. 보훈	9700	여유자금운용	국가보훈처	454,217				
	088. 주택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국토해양부	211,400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47,10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소득세
	088. 주택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국토해양부	4,266,952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088. 주택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국토해양부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088. 주택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088. 주택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088. 주택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국토해양부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088. 주택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1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융자)	국토해양부	4,311,355				
	088. 주택	12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구입·전세자금융자)	국토해양부	5,700,000				
	088. 주택	14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국민임대주택융자)	국토해양부	2,368,054				
	088. 주택	2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공공임대융자)	국토해양부	1,182,145				
	088. 주택	21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기금운영비)	국토해양부	300				
	088. 주택	2600	주택금융지원	금융위원회	196,578				
	088. 주택	3400	기금운영비(주택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57,425				
	088. 주택	8400	내부거래지출	국토해양부	1,221,864				
	088. 주택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국토해양부	31,203				
	088. 주택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국토해양부	13,379				
	088. 주택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5,949				
	088. 주택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국토해양부	389,364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8. 주택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국토해양부	60,490				
	088. 주택	9700	여유자금운용	금융위원회	1,188,933				
	088. 주택	9700	여유자금운용	국토해양부	5,087,873				
	088. 주택	9800	차입금원금상환	금융위원회	28,000				
	088. 주택	9800	차입금등원금상환	국토해양부	12,180,000				
	089. 사회복지일반	6500	복권기금운영 (사회복지법정지원)	기획재정부	15,479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보건복지부	260,232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577,00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111,000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법인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이자소득 비과세)	보건복지부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1,535,100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장기주식형·회사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10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	소득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배당소득 비과세)	보건복지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등	260,90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장기주식형·회사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10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공익기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8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2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보건복지부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	소득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보건복지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18,900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보건복지부		영농·영어 조합법인 배당소득 저율과세	16,000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보건복지부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보건복지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보건복지부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보건복지부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보건복지부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839,600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소득세
	089. 사회복지일반	7000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보건복지부	265,973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97,000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개별소비세, 교육세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0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14호	부가가치세
	089. 사회복지일반	7200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124				
	089. 사회복지일반	7500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보건복지부	3,075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보건	091. 보건의료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보건복지부	136,489				
	091. 보건의료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보건복지부	65,314				
	091. 보건의료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보건복지부	65,347				
	091. 보건의료	280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67,573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산업육성	보건복지부	128,640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산업육성	보건복지부	180,648				
	091. 보건의료	3100	생명과학연구지원	보건복지부	0				
	091. 보건의료	3200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보건복지부	10,113				
	091. 보건의료	3200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보건복지부	10,812				
	091. 보건의료	3300	국민건강생활실천	보건복지부	108,458				
	091. 보건의료	3300	국민건강생활실천	보건복지부	1,103				
	091. 보건의료	3500	암및희귀질환지원	보건복지부	53,285				
	091. 보건의료	3500	암및희귀질환지원	보건복지부	98,954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보건	091. 보건의료	3600	정신질환관리	보건복지부	18,114				
	091. 보건의료	3600	정신질환관리	보건복지부	4,485				
	091. 보건의료	3700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	31,471				
	091. 보건의료	3800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15,648				
	091. 보건의료	3900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	13,515				
	091. 보건의료	4000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9,133				
	091. 보건의료	4100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	10,803				
	091. 보건의료	4200	구강보건사업지원	보건복지부	2,738				
	091. 보건의료	4200	구강보건사업지원	보건복지부	20,113				
	091. 보건의료	4300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보건복지부	1,276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091. 보건의료	4300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보건복지부	153,561				
	091. 보건의료	4500	소록도병원	보건복지부	8,056				
	091. 보건의료	4600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부	9,081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보건	091. 보건의료	4700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부	6,604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지원	보건복지부	56,959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지원	보건복지부	150,303				
	091. 보건의료	5100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97				
	091. 보건의료	8000	회계간거래	보건복지부	32,336				
	091. 보건의료	8400	회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186,923				
	091. 보건의료	8800	회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339				
	091. 보건의료	8800	회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505				
	091. 보건의료	8800	회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804				
	091. 보건의료	8800	회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948				
	091. 보건의료	8800	회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1,557				
	091. 보건의료	8800	회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558				
	091. 보건의료	8800	회계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639				
	091. 보건의료	9200	기금간거래	보건복지부	1,925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보건	091. 보건의료	9300	계정간거래	보건복지부	2				
	091. 보건의료	9300	계정간거래	보건복지부	2				
	091. 보건의료	9300	계정간거래	보건복지부	2				
	091. 보건의료	9300	계정간거래	보건복지부	2				
	091. 보건의료	9300	계정간거래	보건복지부	2				
	091. 보건의료	9300	계정간거래	보건복지부	2				
	091. 보건의료	9300	계정간거래	보건복지부	2				
	091. 보건의료	9300	계정간거래	보건복지부	37,886				
	091. 보건의료	9700	여유자금운용	보건복지부	129,760				
	091. 보건의료	9700	여유자금운용	보건복지부	30,725				
	091. 보건의료		기타	보건복지부		보험료 특별공제	2,114,600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소득세
	091. 보건의료		기타	보건복지부		의료비 특별공제	817,800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
	092. 건강보험	4900	건강보험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4,647,142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721,700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소득세
	092. 건강보험	4900	건강보험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1,063,062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093. 식품의약안전	1000	식품안전성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청	21,814				
	093. 식품의약안전	1000	식품안전성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청	4,836				
	093. 식품의약안전	2000	의약품안전성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청	5,469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300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법인세
	093. 식품의약안전	3000	의료기기안전성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청	3,813				
	093. 식품의약안전	4000	식의약안전평가원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	59,328				
	093. 식품의약안전	5000	지방청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	3,865				
	093. 식품의약안전	7000	식의약품행정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128,561				
100. 농림수산	101. 농업 · 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농림수산식품부	414,711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26,800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법인세,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868,30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1. 농업 · 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농림수산 식품부	960,10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2,50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득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30,400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증여세
						농협·수업·산립조합 중앙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6,700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법인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1. 농업 · 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농림수산 식품부	10,000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645,7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276,4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8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부가가치세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1,568,5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1. 농업 · 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농림수산 식품부	907,923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9,6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인지세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27,300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 나목	소득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추정곤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라목	
	101. 농업 · 농촌	1100	농어업경영체육성	농림수산 식품부	85,13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3,600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법인세
	101. 농업 · 농촌	1100	농어업경영체육성	농림수산 식품부	100,000	조합법인(농협 · 수협 · 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74,500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법인세
	101. 농업 · 농촌	1300	농수산인력양성	농림수산 식품부	21,962				
	101. 농업 · 농촌	2100	양곡관리	농림수산 식품부	23,634				
	101. 농업 · 농촌	2100	양곡관리	농림수산 식품부	1,389,007				
	101. 농업 · 농촌	2300	농어민금융지원	금융위원회	127,360				
	101. 농업 · 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농림수산식 품부	15,092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1. 농업 · 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농림수산식품부	237,162				
	101. 농업 · 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농림수산식품부	47,856				
	101. 농업 · 농촌	2500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농림수산식품부	4,030				
	101. 농업 · 농촌	2500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농림수산식품부	133,451				
	101. 농업 · 농촌	2600	농지은행(농지,융자)	농림수산식품부	559,962				
	101. 농업 · 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림수산식품부	47,544				
	101. 농업 · 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림수산식품부	20,000				
	101. 농업 · 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림수산식품부	142,150				
	101. 농업 · 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림수산식품부	64,732				
	101. 농업 · 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림수산식품부	627,198				
	101. 농업 · 농촌	3200	경쟁력제고	농림수산식품부	2,000				
	101. 농업 · 농촌	3200	경쟁력제고	농림수산식품부	124,534				
	101. 농업 · 농촌	3200	경쟁력제고	농림수산식품부	229,761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1. 농업 · 농촌	33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농안,융자)	농림수산식품부	849,332				
	101. 농업 · 농촌	3500	경쟁력제고(기금,융자)	농림수산식품부	173,540				
	101. 농업 · 농촌	3500	경쟁력제고(기금,융자)	농림수산식품부	30,000				
	101. 농업 · 농촌	3700	축산업진흥	농림수산식품부	183,960				
	101. 농업 · 농촌	3700	축산업진흥	농림수산식품부	303,089				
	101. 농업 · 농촌	3800	축산업진흥(축발,융자)	농림수산식품부	240,102				
	101. 농업 · 농촌	4000	농업생산기반확충	농림수산식품부	1,970,166				
	101. 농업 · 농촌	4000	농업생산기반확충	농림수산식품부	143,633				
	101. 농업 · 농촌	4000	농업생산기반확충	농림수산식품부	292,391				
	101. 농업 · 농촌	4100	농어업인복지증진	농림수산식품부	369,539				
	101. 농업 · 농촌	4000	농업생산기반확충	농림수산식품부	198,1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1. 농업 · 농촌	4500	농업농촌정보화	농림수산식품부	1,728				
	101. 농업 · 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48,818				
	101. 농업 · 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450				
	101. 농업 · 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1,186,585				
	101. 농업 · 농촌	4500	농업농촌정보화	농림수산식품부	19,043				
	101. 농업 · 농촌	5000	국제협력협상	농림수산식품부	31,969				
	101. 농업 · 농촌	6000	농산물품질관리	농림수산식품부	53,900				
	101. 농업 · 농촌	6100	농업연수	농림수산식품부	2,327				
	101. 농업 · 농촌	6200	가축방역검역 및 수의과학연구	농림수산식품부	47,091				
	101. 농업 · 농촌	6300	식물검역	농림수산식품부	9,959				
	101. 농업 · 농촌	6400	종자관리	농림수산식품부	10,667				
	101. 농업 · 농촌	6400	종자관리	농림수산식품부	14,48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1. 농업 · 농촌	7000	농수산행정	농림수산식품부	286,588				
	101. 농업 · 농촌	7000	농수산행정	농림수산식품부	60,105				
	101. 농업 · 농촌	7000	농수산행정	농림수산식품부	9,139				
	101. 농업 · 농촌	7000	농수산행정	농림수산식품부	3,937				
	101. 농업 · 농촌	7000	농수산행정	농림수산식품부	186,553				
	101. 농업 · 농촌	7000	농수산행정	농림수산식품부	58,167				
	101. 농업 · 농촌	7000	농수산행정	농림수산식품부	7,446				
	101. 농업 · 농촌	7000	농수산행정	농림수산식품부	3,345				
	101. 농업 · 농촌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농림수산식품부	1,447,610				
	101. 농업 · 농촌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농림수산식품부	267,447				
	101. 농업 · 농촌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농림수산식품부	1,307,930				
	101. 농업 · 농촌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농림수산식품부	67,996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1. 농업 · 농촌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농림수산식품부	88,239				
	101. 농업 · 농촌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농림수산식품부	356,000				
	101. 농업 · 농촌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농림수산식품부	41,455				
	101. 농업 · 농촌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농림수산식품부	9,772				
	101. 농업 · 농촌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농림수산식품부	257,447				
	101. 농업 · 농촌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농림수산식품부	11,754				
	101. 농업 · 농촌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농림수산식품부	5,554				
	101. 농업 · 농촌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농림수산식품부	1,807,696				
	101. 농업 · 농촌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농림수산식품부	0				
	101. 농업 · 농촌	9400	기금간거래(예탁금)	농림수산식품부	80,000				
	101. 농업 · 농촌	9700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식품부	338,727				
	101. 농업 · 농촌	9700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식품부	8,03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1. 농업 · 농촌	9700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식품부	195,477				
	101. 농업 · 농촌	9700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식품부	88,833				
	101. 농업 · 농촌	9700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식품부	60,940				
	101. 농업 · 농촌	9700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식품부	31,756				
	101. 농업 · 농촌	7000	농수산행정	농림수산식품부	634				
	101. 농업 · 농촌	9700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식품부	145,451				
	101. 농업 · 농촌	2300	농어민금융지원	금융위원회	337,538				
	101. 농업 · 농촌	3200	기금운영비	금융위원회	1				
	101. 농업 · 농촌	3200	기금운영비	금융위원회	60,361				
	101. 농업 · 농촌	9700	여유자금운용	금융위원회	2,042,733				
	101. 농업 · 농촌	9700	여유자금운용	금융위원회	26,867				
	101. 농업 · 농촌	1100	농업기술연구·개발 및 정보화	농촌진흥청	399,759				
	101. 농업 · 농촌	1100	농업기술연구·개발 및 정보화	농촌진흥청	32,8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1. 농업 · 농촌	1200	농업·농촌기술지원	농촌진흥청	96,310				
	101. 농업 · 농촌	1200	농업·농촌기술지원	농촌진흥청	5,396				
	101. 농업 · 농촌	1400	농업 · 농촌기술지원	농촌진흥청	95,696				
	101. 농업 · 농촌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농촌진흥청	187				
	101. 농업 · 농촌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농촌진흥청	21				
	101. 농업 · 농촌	7100	농촌진흥행정지원	농촌진흥청	100,380				
	101. 농업 · 농촌	7100	농촌진흥행정지원	농촌진흥청	1,157				
	101. 농업 · 농촌	7100	농촌진흥행정지원	농촌진흥청	354,204				
	102. 임업 · 산촌	6600	복권기금운영 (산림환경법정지원)	기획재정부	21,114				
	102. 임업 · 산촌	1200	산림과학기술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57,912				
	102. 임업 · 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산림청	67,015				
	102. 임업 · 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산림청	385,235				
	102. 임업 · 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산림청	131,101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2. 임업 · 산촌	1700	산림자원이용	산림청	144,633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소득세
	102. 임업 · 산촌	1700	산림자원이용	산림청	122,585				
	102. 임업 · 산촌	1700	산림자원이용	산림청	144,592				
	102. 임업 · 산촌	1800	국립자연휴양림조성 · 관리	산림청	36,413				
	102. 임업 · 산촌	1900	산림자원보호	산림청	363,797				
	102. 임업 · 산촌	1900	산림자원보호	산림청	68,495				
	102. 임업 · 산촌	7000	산림행정지원	산림청	129,608				
	102. 임업 · 산촌	7000	산림행정지원	산림청	2,058				
	102. 임업 · 산촌	7000	산림행정지원	산림청	8,100				
	102. 임업 · 산촌	8000	회계간거래	산림청	435,665				
	102. 임업 · 산촌	8000	회계간거래	산림청	43,332				
	102. 임업 · 산촌	8400	회계기금간거래	산림청	710				
	102. 임업 · 산촌	9300	계정간거래	산림청	2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3. 수산 · 어촌	30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30,300				
	103. 수산 · 어촌	30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28,781				
	103. 수산 · 어촌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농림수산식품부	118,905				
	103. 수산 · 어촌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농림수산식품부	78,993				
	103. 수산 · 어촌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농림수산식품부	23,886				
	103. 수산 · 어촌	3300	어촌.어항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144,687				
	103. 수산 · 어촌	3400	수산경영	농림수산식품부	19,643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2,100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소득세, 법인세
	103. 수산 · 어촌	3400	수산경영	농림수산식품부	9,360				
	103. 수산 · 어촌	3400	수산경영	농림수산식품부	109,478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76,5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103. 수산 · 어촌	3400	수산경영	농림수산식품부	183,075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7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00. 농림 수산	103. 수산 · 어촌	3500	원양협력	농림수산식품부	10,845				
	103. 수산 · 어촌	3600	수산연구(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99,623				
	103. 수산 · 어촌	37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기금 · 융자)	농림수산식품부	402,739				
	103. 수산 · 어촌	6600	수산물품질관리	농림수산식품부	10,813				
	103. 수산 · 어촌	6700	어업지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20,912				
	103. 수산 · 어촌	7000	기금운영비(수산)	농림수산식품부	1,546				
	103. 수산 · 어촌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농림수산식품부	15,000				
	103. 수산 · 어촌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농림수산식품부	1,403				
	103. 수산 · 어촌	9700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식품부	82,764				
	104. 식품업	2800	식품산업육성	농림수산식품부	35,051				
	104. 식품업	2800	식품산업육성	농림수산식품부	69,350				
	104. 식품업	2800	식품산업육성	농림수산식품부	75,344				
	104. 식품업	2900	식품산업육성(융자)	농림수산식품부	455,2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100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청	300,012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창업및사업전환지원	중소기업청	1,579,500				
	111. 산업금융지원	1300	중소기업기술지원	중소기업청	539,100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법인세
	111. 산업금융지원	1300	중소기업기술지원	중소기업청	119,700				
	111. 산업금융지원	1300	중소기업기술지원	중소기업청	258,000				
	111. 산업금융지원	2200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청	220,000				
	111. 산업금융지원	2300	중소기업신성장지원	중소기업청	782,000				
	111. 산업금융지원	2400	산업금융지원	금융위원회	1,180,760				
	111. 산업금융지원	2400	산업금융지원	금융위원회	2,425,230				
	111. 산업금융지원	3300	기금운영비	금융위원회	162,554				
	111. 산업금융지원	3300	기금운영비	금융위원회	310,027				
	111. 산업금융지원	9700	여유자금운용	금융위원회	1,889,215				
	111. 산업금융지원	9700	여유자금운용	금융위원회	1,171,38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3. 무역및투자유치	1100	무역진흥	지식경제부	351,236				
	113. 무역및투자유치	1200	무역구제	지식경제부	1,150				
	113. 무역및투자유치	1300	통상협력	지식경제부	9,840				
	113. 무역및투자유치	1400	외국인투자유치및해외투자	지식경제부	2,61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28,400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소득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54,500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0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법인세
	113. 무역및투자유치	1500	무역보험지원	지식경제부	1,049,316				
	113. 무역및투자유치	1600	무역보험지원(기금운영비)	지식경제부	94,202				
	113. 무역및투자유치	9700	여유자금운용	지식경제부	1,243,453				
	113. 무역및투자유치	1400	중소기업수출및판로지원	중소기업청	69,610				
	113. 무역및투자유치	1400	중소기업수출및판로지원	중소기업청	14,388				
	114. 산업진흥 · 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지식경제부	15,01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31,100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소득세,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1,432,000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소득세, 법인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40,000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관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 · 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지식경제부	110,40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120,900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816,1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소득세, 법인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2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5,6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소득세, 법인세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1,0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소득세, 법인세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140,400	관세법 제89조 제1항	관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8,500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	관세
	114. 산업진흥 · 고도화	3300	지역경제활성화	지식경제부	94,661				
	114. 산업진흥 · 고도화	3300	지역경제활성화	지식경제부	103,07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 · 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지식경제부	447,170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4,8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개별소비세, 교육세
	114. 산업진흥 · 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지식경제부	1,368				
	114. 산업진흥 · 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지식경제부	71,544				
	114. 산업진흥 · 고도화	3700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지식경제부	18,927				
	114. 산업진흥 · 고도화	4100	정보통신산업활성화	지식경제부	34,588				
	114. 산업진흥 · 고도화	4300	산업융합원천기술확보(산업)	지식경제부	596,648				
	114. 산업진흥 · 고도화	4400	신시장창출(산업)	지식경제부	360,938				
	114. 산업진흥 · 고도화	4500	인프라조성(산업)	지식경제부	264,699				
	114. 산업진흥 · 고도화	4600	기관지원(산업기술)	지식경제부	41,886				
	114. 산업진흥 · 고도화	4200	광역경제활성화	지식경제부	1,162,0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5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소득세, 법인세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25,5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관세
	114. 산업진흥 · 고도화	3800	주력산업진흥(기금,융자)	지식경제부	2,525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 · 고도화	3900	주력산업진흥(기금운영비)	지식경제부	956				
	114. 산업진흥 · 고도화	9700	여유자금운용	지식경제부	7,873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500	중소기업정책지원	중소기업청	2,649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11,50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소득세, 법인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301,50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득세, 법인세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41,50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소득세, 법인세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6,000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소득세, 법인세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500	중소기업정책지원	중소기업청	4,534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과세특례	38,400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소득세, 법인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3,4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3	증권거래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600	중소기업협력지원	중소기업청	22,889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700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중소기업청	50,811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800	창업및벤처투자	중소기업청	139,03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93,10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득세, 법인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800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법인세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800	창업및벤처투자	중소기업청	85,242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법인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200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득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800	창업및벤처투자	중소기업청	865,03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700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3조의2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인지세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900	소상공인 · 재래시장지원	중소기업청	52,55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법인세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14,2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2	교통세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900	소상공인 · 재래시장지원	중소기업청	229,124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41,9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소득세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107,4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득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262,900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 · 고도화	2000	동반성장지원	중소기업청	6,320				
	114. 산업진흥 · 고도화	2100	지식서비스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청	46,500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700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중소기업청	17,894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900	소상공인 · 재래시장지원	중소기업청	400,000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000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특허청	44,166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특허청	92,755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특허청	21,203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특허청	44,177				
	114. 산업진흥 · 고도화		기타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114. 산업진흥 · 고도화		기타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114. 산업진흥 · 고도화		기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300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소득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 · 고도화		기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500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소득세
	114. 산업진흥 · 고도화		기타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법인세
	114. 산업진흥 · 고도화		기타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114. 산업진흥 · 고도화		기타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114. 산업진흥 · 고도화		기타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114. 산업진흥 · 고도화		기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15,2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증권거래세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지식경제부	373,713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100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	지식경제부	792,067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200	에너지안전관리	지식경제부	79,407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200	에너지안전관리	지식경제부	93,464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지식경제부	1,504,715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31,10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법인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48,500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소득세, 법인세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지식경제부	445,000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7,2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법인세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18,1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관세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6,100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부가가치세, 관세, 소득세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수급안정	지식경제부	609,911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500	전력경쟁력강화 · 수급안정	지식경제부	289,102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600	원전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지식경제부	169,831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국내외자원개발(기금, 융자)	지식경제부	20,0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방사성폐기물관리	지식경제부	149,207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100	산업융합원천기술확보(에너지)	지식경제부	255,31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100	산업융합원천기술확보(에너지)	지식경제부	406,232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200	신시장창출(에너지)	지식경제부	19,53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300	인프라조성(에너지)	지식경제부	107,604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300	인프라조성(에너지)	지식경제부	45,606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400	기관지원(에너지)	지식경제부	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7200	전력경쟁력강화 · 수급안정(운영)	지식경제부	9,04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7300	방사성폐기물관리행정지원	지식경제부	49,842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지식경제부	150,00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지식경제부	200,00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지식경제부	142,38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9700	여유자금운용	지식경제부	311,502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9700	여유자금운용	지식경제부	301,174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7100	지식경제부행정지원	지식경제부	117,574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7100	지식경제부행정지원	지식경제부	26,652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7100	중소기업행정지원	중소기업청	60,649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7100	중소기업행정지원	중소기업청	845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7100	중소기업행정지원	중소기업청	105,809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중소기업청	242,967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9100	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중소기업청	87,780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9200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중소기업청	6,989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9800	차입금원금상환	중소기업청	2,913,213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특허청	117,347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8400	회계기금간 거래	특허청	9,686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특허청	30,000				
	116. 산업 · 중소기업일반	9300	계정간 거래	특허청	3,952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5000	지방도구조개선	행정안전부	190				
	121. 도로	5000	지방도구조개선	행정안전부	245,294				
	121. 도로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5,949,158				
	121. 도로	1500	고속도로건설	국토해양부	1,063,195				
	121. 도로	1600	국도건설	국토해양부	3,769,495				
	121. 도로	1600	국도건설	국토해양부	78,170				
	121. 도로	1700	도로관리	국토해양부	890,064				
	121. 도로	1700	도로관리	국토해양부	15,958				
	121. 도로	1800	민자도로건설및관리	국토해양부	420,090				
	121. 도로	1800	민자도로건설및관리	국토해양부	0				
	121. 도로	1900	지자체도로건설지원	국토해양부	699,17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1900	지자체도로건설지원	국토해양부	7,000				
	121. 도로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873,763				
	121. 도로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국토해양부	9,220				
	121. 도로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국토해양부	120				
	121. 도로	8800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국토해양부	319				
	122. 철도	2700	철도안전및운영	국토해양부	898,066				
	122. 철도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국토해양부	80,456				
	122. 철도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국토해양부	15,048				
	122. 철도	2500	고속철도건설	국토해양부	900,000				
	122. 철도	2600	일반철도건설	국토해양부	1,449,490				
	122. 철도	2700	철도안전및운영	국토해양부	420,537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국토해양부	830,450				
	122. 철도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830,45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20. 교통 및 물류	122. 철도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3,398,595				
	123. 도시철도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1,053,831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국토해양부	575,364				
	123. 도시철도	3100	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	국토해양부	378,382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31,8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
	123. 도시철도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 상환)	국토해양부	18,666				
	123. 도시철도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 상환)	국토해양부	3,435				
	124. 해운 · 항만	6000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국토해양부	41,369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52,5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124. 해운 · 항만	6000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국토해양부	26,083				
	124. 해운 · 항만	6000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국토해양부	29,000				
	124. 해운 · 항만	6000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국토해양부	1,661				
	124. 해운 · 항만	6100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국토해양부	35,178				
	124. 해운 · 항만	6200	해양 및 해상교통 안전관리	국토해양부	15,094				
	124. 해운 · 항만	7200	행정형 기관운영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	98,032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20. 교통 및 물류	124. 해운 · 항만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1,102,029				
	124. 해운 · 항만	5000	신항만 개발	국토해양부	622,366				
	124. 해운 · 항만	5100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국토해양부	538,764				
	124. 해운 · 항만	5100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국토해양부	68,235				
	124. 해운 · 항만	5100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국토해양부	22,613				
	124. 해운 · 항만	6200	해양 및 해상교통 안전관리	국토해양부	3,700				
	124. 해운 · 항만	5200	부두개발 및 항만민자유치	국토해양부	54,100				
	124. 해운 · 항만	6200	해양 및 해상교통 안전관리	국토해양부	48,100				
	124. 해운 · 항만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15,287				
	125. 항공 · 공항	3600	항공발전지원	국토해양부	5,875	항공기 발착, 항행안전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종료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6호	관세
	125. 항공 · 공항	3600	항공발전지원	국토해양부	50,877				
	125. 항공 · 공항	3700	항공운영지원	국토해양부	6,810				
	125. 항공 · 공항	3500	일반공항건설및관리	국토해양부	2,871				
	125. 항공 · 공항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772,551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20. 교통 및 물류	126. 물류등기타	2000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기획재정부	19,302				
	126. 물류등기타	2200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기획재정부	20,000				
	126. 물류등기타	5300	물류정책	기획재정부	20,500				
	126. 물류등기타	5900	여수세계박람회지원	기획재정부	50,000				
	126. 물류등기타	2100	기금운영비	기획재정부	10,466				
	126. 물류등기타	9700	여유자금운용	기획재정부	192,028				
	126. 물류등기타	2700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지식경제부	169,959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126. 물류등기타	2000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국토해양부	85,341				
	126. 물류등기타	2200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국토해양부	405,500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제106조 제2항 제11호, 제109조의3, 제116조 제1항 제21호	
	126. 물류등기타	4000	물류정책	국토해양부	89,750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1,0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법인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20. 교통 및 물류	126. 물류등기타	4100	국토해양연구개발	국토해양부	414,283				
	126. 물류등기타	4100	국토해양연구개발	국토해양부	188,210				
	126. 물류등기타	4200	국토해양정보화	국토해양부	86,060				
	126. 물류등기타	4200	국토해양정보화	국토해양부	584				
	126. 물류등기타	4200	국토해양정보화	국토해양부	5,156				
	126. 물류등기타	4300	건설정책지원	국토해양부	16,140				
	126. 물류등기타	4400	국토해양인재개발	국토해양부	1,503				
	126. 물류등기타	4600	자동차및교통정책	국토해양부	73,343				
	126. 물류등기타	4700	건설기술정책	국토해양부	12,530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국토해양부	49,70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70,4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부가가치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274,1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개별소비세, 교육세
	126. 물류등기타	4500	광역교통정책	국토해양부	92,087				
	126. 물류등기타	7000	국토해양행정지원	국토해양부	7,822				
	126. 물류등기타	7000	국토해양행정지원	국토해양부	417,378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20. 교통 및 물류	126. 물류등기타	7100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운영(울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	5,811				
	126. 물류등기타	4800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운영(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	10,571				
	126. 물류등기타	8800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국토해양부	431				
	126. 물류등기타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15,282				
	126. 물류등기타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126. 물류등기타		기타			비거주자드으이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130. 통신	131. 방송통신	1200	U-Korea기반조성	지식경제부	19,300				
	131. 방송통신	3200	IT산업기반조성	지식경제부	26,838				
	131. 방송통신	3400	SW산업경쟁력강화	지식경제부	15,645				
	131. 방송통신	4100	IT산업해외진출지원	지식경제부	5,036				
	131. 방송통신	8000	회계간거래	지식경제부	5,456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30. 통신	131. 방송통신	3100	산업원천기술개발지원(정보통신)	지식경제부	24,106				
	131. 방송통신	3500	정보통신산업진흥(비 R&D)	지식경제부	32,200				
	131. 방송통신	3600	정보통신산업진흥	지식경제부	2,793				
	131. 방송통신	3700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지식경제부	0				
	131. 방송통신	4200	산업융합원천기술확보(정보통신)	지식경제부	416,283				
	131. 방송통신	4300	신시장창출(정보통신)	지식경제부	33,930				
	131. 방송통신	4400	인프라조성(정보통신)	지식경제부	182,174				
	131. 방송통신	7100	정보통신행정지원	지식경제부	16,770				
	131. 방송통신	9000	기금간거래	지식경제부	250,000				
	131. 방송통신	9700	여유자금운용	지식경제부	251,928				
	131. 방송통신	1000	방송통신융합촉진	방송통신위원회	1,965				
	131. 방송통신	1200	방송인프라개선	방송통신위원회	13,557				
	131. 방송통신	1300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방송통신위원회	3,920				
	131. 방송통신	1300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방송통신위원회	8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30. 통신	131. 방송통신	1500	전파관리및연구기반확충	방송통신위원회	36,915				
	131. 방송통신	1500	전파관리및연구기반확충	방송통신위원회	15,774				
	131. 방송통신	3100	통신서비스고도화	방송통신위원회	23,220				
	131. 방송통신	4100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방송통신위원회	2,030				
	131. 방송통신	4300	네트워크고도화	방송통신위원회	13,800				
	131. 방송통신	4400	정보보호강화	방송통신위원회	56,387				
	131. 방송통신	5100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방송통신위원회	12,760				
	131. 방송통신	7100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위원회	140,933				
	131. 방송통신	4300	네트워크고도화	방송통신위원회	20,000				
	131. 방송통신	6100	방송통신연구개발기반조성(R&D)	방송통신위원회	199,327				
	132. 우정	5300	우체국보험 내실화	지식경제부	276,034				
	132. 우정	7200	우정사업행정지원	지식경제부	31,258				
	132. 우정	5100	국민과함께하는 우편서비스	지식경제부	819,362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30. 통신	132. 우정	5400	우정사업경영지원	지식경제부	756,961				
	132. 우정	7200	우정사업행정지원	지식경제부	1,591,375				
	132. 우정	7200	우정사업행정지원	지식경제부	3,959				
	132. 우정	7200	우정사업행정지원	지식경제부	2,387				
	132. 우정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지식경제부	36,374				
	132. 우정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지식경제부	329,449				
	132. 우정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지식경제부	351,352				
	132. 우정	8800	회계기금간거래	지식경제부	146,075				
	132. 우정	9300	계정간거래	지식경제부	306,948				
	132. 우정	5200	우체국예금성장강화	지식경제부	1,818,187				
	132. 우정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지식경제부	44,542				
	132. 우정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지식경제부	14,959				
	132. 우정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지식경제부	21,487				
	132. 우정	9300	계정간거래	지식경제부	13,426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40. 국토 및 지역 개발	141. 수자원	5000	용수공급및개발	국토해양부	15,800				
	141. 수자원	5100	수자원정책	국토해양부	18,060				
	141. 수자원	5200	댐건설및댐치수능력증대	국토해양부	321,584				
	141. 수자원	5300	하천관리및홍수예보	국토해양부	4,853,716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국토해양부	15,430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3,200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법인세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세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0,10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소득세, 법인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74,80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9,000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소득세, 법인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40. 국토 및 지역 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국토해양부	8,000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05,600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소득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400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소득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700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소득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40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법인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40. 국토 및 지역 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국토해양부	183,404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123,5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개별소비세, 교육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11	
						제주도여행객의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27,3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40. 국토 및 지역 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국토해양부	355,205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1,8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개별소비세, 교육세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	
						금융중심지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 과세 등	200,600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19조의2 제3호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국토해양부	15,059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국토해양부	97,900				
	142. 지역및도시	5700	국토정보관리	국토해양부	11,200				
	142. 지역및도시	5700	국토정보관리	국토해양부	90,717				
	142. 지역및도시	5800	국토지리정보원운영	국토해양부	74,862				
	142. 지역및도시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국토해양부	147,00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40. 국토 및 지역 개발	142. 지역및도시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기획재정부	4,474,279				
	142. 지역및도시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국토해양부	9,920				
	142. 지역및도시	8000	전출금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630,216				
	142. 지역및도시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804,025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등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법인세
	142. 지역및도시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911				
	143. 산업단지	6000	산업단지개발및지원	국토해양부	200				
	143. 산업단지	6000	산업단지개발및지원	국토해양부	908,108				
150. 과학 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교육과학기 술부	385,833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교육과학기 술부	962,042				
	151. 기술개발	1300	거대과학기술개발	교육과학기 술부	306,163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및 안전	교육과학기 술부	67,654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및 안전	교육과학기술부	174,800				
	151. 기술개발	3400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영비	교육과학기술부	3,899				
	151. 기술개발	9700	여유자금운용	교육과학기술부	19,04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교육과학기술부	28,500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1,5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법인세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교육과학기술부	20,36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700	과학기술인력양성	교육과학기술부	42,789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700	과학기술인력양성	교육과학기술부	22,400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800	과학문화창달	교육과학기술부	48,009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800	과학문화창달	교육과학기술부	36,246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900	과학기술국제협력	교육과학기술부	90,762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342,644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15,744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3000	과학기술기반조성(융자)	교육과학기술부	37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교육과학기술부	34,305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9700	여유자금운용	교육과학기술부	5,24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기관지원(산업기술)	지식경제부	456,984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100	기관지원(에너지)	지식경제부	176,73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지식경제부	53,618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100	과학기술종합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8,898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8000	회계간 거래	교육과학기술부	40,271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국립중앙과학관운영	교육과학기술부	20,010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300	국립과천과학관운영	교육과학기술부	27,96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교육과학기술부	579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교육과학기술부	4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8800	회계기금간거래	교육과학기술부	387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8800	회계기금간거래	교육과학기술부	407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9300	계정간거래	교육과학기술부	1,081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9300	계정간거래	교육과학기술부	1,501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9200	과학기술진흥 기금운영비	교육과학기술부	915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100	기상예보	기상청	34,258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200	기상관측	기상청	33,067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300	기후변화 과학	기상청	7,832				

분야	부문	프로그램(예산지출)		소관	예산안	조세지출내역	2011잠정	근거규정	세목
150. 과학 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400	기상산업정보	기상청	20,544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100	지역기상서비스	기상청	8,521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3100	기상연구	기상청	28,120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4100	책임행정기관 운영	기상청	10,666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7100	기상행정 지원	기상청	130,587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7100	기상행정 지원	기상청	10,631				
160. 예비비	161. 예비비	3000	예비비	기획재정부	2,500,000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김우철,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

박기백·김우철·박명호, 『우니라라 기준조세체계 정립 및 조세지출 분류방안』,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008.9.

박기백·연태훈, 『조세지출의 합리적 추계방법』, 한국조세연구원, 1999.

박명호·김우철·전병힐, 『조세지출규모의 추정방법 및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008.9.

박명호·전병힐,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09.

박명호·정희선,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6.

이영환·신영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2009.9.

임주영, 『조세지출의 범위와 추계방법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10.

전승훈,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4.

정지은,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9.

Craig Jon and William Allan, "Fiscal Transparency, Tax Expenditures, and Budget Processes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mimeo, 2004

OECD, *Tax Expenditures : Recent Experiences*, Paris, 1996.

OEC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0.

OECD, *R&D Tax Incentives and R&D Statistics : What Next?*, Paris, 2007

Seguin, Marc and Simon, Burr, "Federal Tax Expenditures in Canada," in Polackova Brixi, Valenduc, and Swift, Tax Expenditures－Shedding light on Government Spending through the Tax System,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pp 99－100, 2005.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Ⅷ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 간 일	2010년 11월 1일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Tel 02·2070·3114
인 쇄 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TEL 02·313·7593)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팀 (Tel 02·788·377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6073-388-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0